제310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8월23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 ····· 2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
   가. 환경부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윤광식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계륜 입법조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을 완전히 쾌유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주영순 위원님으로부터 잠깐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계륜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국가와 우리 또 노동계, 경제계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신계륜 주영순 위원님이 오시니까 자리가 꽉 차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환경부 소관과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위법 내지 부당한 예산 지출 여부를 파악하여, 지적하여 정부의 재정 집행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2(의안의 자동상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은 같은 법 제59조 각 호에 따른 상정 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보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국회법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27일 의사일정에 환경부 소관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등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모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정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1. 2011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부 소관

(10시16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생물자원 확보와 이용기반 확대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 개발을 위하여 핵심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서비스 취약계층과 어린이·노약자 등 환경 민감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환경복지 강화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총 5조 369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81.9%인 4조 399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 현액 5조 3820억 원 중 92.1%인 4조 956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606억 원은 이월하고 265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97억 원을 배정받아 가축전염병 매몰지역 상수도보급 관련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에 2665억 원,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3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수입은 9764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90.7%인 8859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은 계획현액 8689억 원 중 97.8%인 849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53억 원을 이월하고 138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수입은 190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94.5%인 180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은 계획현액 139억 원 중 34%인 47억 원을 집행하고 9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대부분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나 일부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환경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4일 제309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석 대변인 직무대리입니다.

박미자 새만금지방환경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정연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 세입 예산액은 4조 2714억 원이며 전년 대비 3064억 원이 증가되었고 징수 결정액은 5조 36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납액은 4조 39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5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5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927억 원이 증가한 4조 8612억이며 전년 이월액, 예비비 등 5208억 원이 증액되어 현액은 5조 3820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4조 956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895억 원이 감소한 1606억 원이며 이는 계속사업비 이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이월,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지출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은 2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수 결함에 따른 미집행액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8쪽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세입예산이 없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토지대여료 등에서 4억 4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5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분할 납부로 인한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등으로 8700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2조 816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보급 관련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2665억 원과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시설 피해재해복구비 지원액 32억 원 등 총 2697억 원의 예비비가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조 863억 원이 되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었습니다.

11쪽 예비비 사용내역과 지출내역입니다.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환특회계 세입예산액은 4조 2714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조 3670억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중 81.9%인 4조 3970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0.4%인 199억 원이 불납 결손처리 되고 17.7%인 9501억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수납액 4조 3970억 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법정부담금이 대부분인 경상이전수입이 924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조 863억 원, 융자원금 회수금 2664억 원, 융자금 이자수입 등 재산수입 409억 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수입 786억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 199억 원과 미수납액 9501억 원의 세부내역은 1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납결손액 내역입니다.

불납결손액 199억 원은 대부분 법정부담금인 경상이전수입에서 발생되었으며, 소멸시효완성 144억 원, 체납자 무재산 14억 원, 무재산 행방불명 14억 원과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공매 등을 거쳐도 실익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2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 9501억 원도 대부분 법정부담금인 경상이전수입에서 발생되었으며,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주지 불명 5299억 원, 납기미도래 464억 원, 징수유예 등 기타 사유 3738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4조 2715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501억 원, 예비비 2697억 원,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1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조 7923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91.1%인 4조 3666억 원이 지출되고 1606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2650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액 4조 3666억 원의 주요내역은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상하수도 사업 2조 2403억 원,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수질보전 사업에 4936억 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등 폐기물관리사업에 2535억 원, 대기보전사업에 2743억 원, 자연보전사업에 3564억 원, 기타 환경보호일반에 7484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606억 원과 불용액 2650억 원의 상세내역은 22쪽과 2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 집행내역입니다.

부문별 지출액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사용내역, 이용액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보급관련 재해복구지역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을 위해 2665억 원,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상수도관 보수, 육상쓰레기 수거처리, 국립공원 탐방로 보수 등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3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용액 95억 원은 구제역·AI 가축매몰지 주변 먹는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과 국민건강보험 국가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용재원은 수질보전 분야 및 환경보호일반 분야 등의 절감예산이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전용액 내역입니다.

전용액은 397억 원으로 주요 사례를 보고드리면, 구제역·AI 가축매몰지 보강 및 주변 관정 수질분석 등을 위해 상하수도 분야에서 352억 원을 전용·활용하고,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등을 위해 농촌폐비닐처리사업 민간이전을 자치단체이전으로 전용하는 등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21억 원을 전용·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보전 분야에서 9억 원, 자연보전 분야에서 7억 원, 환경보호일반에서 7억 원 등을 전용·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680억 원, 수질보전 분야 173억 원, 폐기물관리 분야 23억 원, 대기보전 분야 70억 원, 자연보전 분야 464억 원, 환경보호일반에서 197억 원 등 총 1606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세수결함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2011년과 2012년 종료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97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기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이월 315억 원, 계속사업비 이월 276억 원, 계약체결과 설계지연 등 기타사유로 37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1021억 원, 수질보전 분야 381억 원, 폐기물관리 분야 54억 원, 대기보전 분야 114억 원, 자연보전 분야 18억 원, 환경보호일반에서 1063억 원 등 총 265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세수결함을 고려 불용한 2457억 원과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한 집행잔액 등 193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없었으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와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정산잔액과 이자수입으로 2억 원의 징수결정액이 발생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5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09억 원으로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825억 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4억 원 등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 세입 예산액은 없었으며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잔액 반납 등으로 발생한 1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7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908억 원이며 전액 지출되었습니

다.

상하수도 사업에 4069억 원, 폐기물관리에 15억 원, 자연보전에 756억 원 그리고 환경보호일반 분야에 68억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 및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29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원이며 전액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총 2697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동 예비비는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보급 관련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에 2665억 원, 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환경시설 복구비 지원에 3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2쪽부터는 기금부분 결산입니다.

먼저 4대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9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88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8억 원은 물이용부담금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897억 원은 물이용부담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출결산입니다.

계획현액은 8689억 원으로 현액 대비 97.8%인 849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1261억 원, 환경기초시설에 4840억 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에 1396억 원, 오염총량관리에 172억 원 그리고 기타수질개선지원에 597억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3억 원, 불용액은 138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4쪽~37쪽까지는 4대강 수계기금별 집행상세내역이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석면피해구제기금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190억 원이며, 수납액은 180억 원으로 94.5%가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억 원으로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산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결산입니다.

계획현액은 139억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원으로 현액 대비 34%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24억 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3억 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92억 원은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인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 인정자 수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0쪽 국유재산 채권입니다.

일반회계 국유재산은 2010년 말 453억 원보다 453억 원이 증가한 90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공공용재산의 결산반영,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국유재산 재평가 등으로 1477억 원이 증가하고, 국립공원 취사장 및 안내표지판 등 철거, 건물·공작물 감가상각 등으로 1024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환경개선특별회계 국유재산은 2010년 말 1조 953억 원보다 692억 원이 증가한 1조 1645억 원입니다.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입, 국립공원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입, 왕피천 환경출장소 청·관사 신축과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토지매입사업 등으로 9630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구청사 철거,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지장물 철거, 지자체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매각, 건물·공작물 감가상각 등으로 8938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1쪽 4대강수계관리기금의 국유재산은 8082억 원으로 2010년 말 9001억 원보다 9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으로 2545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수변녹지대 조성을 위한 매수 건축물 철거 등으로 3465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2쪽은 4대강 수계기금별 국유재산 상세내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43쪽 채권입니다.

2011년 말 기준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토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등 8700만 원입니다.

다음 44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2조 4712억 원으로 법정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9480억 원, 상환기간 미도래 융자회수금 1조

5217억 원, 기타수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45쪽 4대강수계관리기금 채권 현재액은 896억 원으로 물이용부담금과 사업비 정산금액인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한강 524억 원, 낙동강 205억 원, 금강 98억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69억 원 등입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기금 채권 현재액은 10억 원으로 석면피해구제 법정분담금 및 경상이전수입 정산잔액에 대한 미수납액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결산입니다.

환경부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와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작성되었으며,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산은 5조 374억 원으로 토지 및 건물 등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 최초 적용, 장·단기 대여금 회수와 미수부담금 수익,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전년 대비 8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962억 원으로 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을 위한 차입금 증가와 퇴직급여충당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4조 9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프로그램 순원가는 5조 297억 원으로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관리, 4대강유역관리 프로그램 관련 지출 증가로 전년 대비 9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는 3482억 원으로 감가상각 증가, 전년도에 비배분비용으로 인식되었던 수수료와 프로그램 순원가로 인식되었던 인건비를 관리운영비로 재분류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3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배분비용은 5818억 원으로 자산평가 손실액과 대손상각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8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배분수익은 1271억 원으로 이자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교환수익은 8398억 원으로 물이용부담금 수익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요소를 반영한 재정운영 결과는 4조 99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5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2011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4조 9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운영 결과 8451억 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서 25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감가상각 최초 적용 등으로 인한 자산재평가이익 등 조정항목에서 4869억 원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청에서는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기상 업무 선진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위험기상 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기상기후산업 육성 등 21세기 미래 지향적 국가 기상업무 발전을 위해서 선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시켰으며,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상기후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WMO 집행이사국 선임과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발족과 더불어 천리안 위성 자료 및 수치예보 자료의 아시아 지역 주요도시 제공, 범정부적 레이더 융합 행정 등을 통해 선진 기상업무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보·특보 기준 개선과 태풍 5일 예보제 운영 등 위험기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폭염특보 등 보건·생활 기상서비스 확대로 서민생활 중심의 기상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예보 체감 및 기상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화산 대응 종합대책 수립과 더불

어 일본 대지진에 따른 지진해일 영향 및 방사능 확산 가능성 등 선제적인 과학정보 제공으로 지진, 화산 분화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켰으며,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등 기후변화 감시 기술 확보를 통해 고품질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확산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예보의 선진화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보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은 21억 5000만 원이었으나 연구개발사업 정산액 증가 등의 수입으로 25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24억 9000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액은 전년 대비 1.3%가 증가되었으며, 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3002억 원이며, 이 중 90%인 2705억 원을 지출하였고 238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5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프로그램별로는 기상예보 부문에 333억 원, 기상관측 부문에 343억 원, 기후변화과학 부문에 87억 원, 기상산업정보 부문에 203억 원, 지역기상서비스 및 기상연구 부문에 377억 원, 책임행정기관 운영 부문에 104억 원, 기상행정지원 부문에 118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경우 7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 개요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는데,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결산 개요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5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4%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24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대행역무사업 집행 잔액 정산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7억 8000만 원, 항공기상정보 제공 및 기상측기 검정 등 수수료 15억 3000만 원, 관용차량 매각대 등 기타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을 보면 구청사 전기공사 구상금 8500만 원,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등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889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13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 2010년 대비 20.1% 증가한 3002억 원이 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10년도 대비 110.2% 증가한 238억 원이며, 불용액은 58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은 2782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8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 2865억 원이 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10년도 대비 103.8%가 증가한 167억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 운영, 낙찰차액 등으로 5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06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3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 137억 원이며, 이 중 국립기상연구소 및 기상통신소 신축 지원 등으로 인해서 시설비 등 7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신규 사업 및 종료 사업과 9쪽부터 11쪽까지의 세입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기상용 슈퍼컴 운영 205억 원,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89억 원 등 기상예보 부문에 333억 원, 지상기상 및 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에 97억 원,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에 89억 원, 고층기상관측망 확충에 80억 원 등 기상관측 부문에 343억 원입니다.

기후변화감시사업에 46억 원, 아태기후네트워크 구축 37억 원 등 기후변화 과학 부문에 8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사업에 56

억 원, 시스템 운영사업 147억 원 등 기상산업정보 부문에 203억 원, 지역기상서비스 부문의 부산 등 5개 지방청 운영 사업에 총 85억 원, 선진기상기술개발 및 실용화기술개발 사업에 171억 원, 기상관측위성 개발사업에 120억 원 등 기상연구 부문에 29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책임행정기관 운영에 104억 원, 인건비 627억 원, 기본경비 158억 원, 청사 확보 및 시설 개선 177억 원, 기상기후지진기술 개발사업 185억 원 등 기상행정 지원 부문에 118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전용액은 총 8억 원으로, 기상1호 건조 지연에 따른 현장감독 등 국내 여비 부족 1500만 원 등 기상관측에 3200만 원, 제주 고산 온실가스 관측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부족 등 기후변화 과학부문에 3500만 원, 강원지역 대설 감시 강화를 위한 라디오존데 구매 재료비 부족 3000만 원 등 기상연구 부문에 4000만 원, 인사 이동에 따른 이전비 증가 및 교육 증대에 따른 국내 여비 부족액 2000만 원 등 책임행정기관 운영에 2600만 원, 그리고 본청 및 소속기관 직급 보조비 2억 원, 청원경찰 및 비정규직 근로자 연금지급금, 일용임금 부족액 2100만 원 등 기상행정지원 부문에 6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이월액은 총 167억 원으로, 레이더의 기종 통일을 위한 일괄 구매 추진에 따른 레이더 도입 지연으로 인한 백령도 레이더타워 리모델링 공사 발주 지연으로 11억 원, 울릉도·독도 기후변화 감시소 장비 구입 지연으로 6억 원, 천리안 위성 안테나 예비품 계약 지연으로 2억 원, 대구기상대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와 도시계획 변경 결정 지연으로 73억 원, 보성종합기상 관측탑 구축사업의 계약 지연으로 56억 원, 백령도기상대 관사 부지, 묘지 이전 업무협의 지연 등으로 10억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불용액은 총 58억 원으로, 기상용 슈퍼컴 운영 공공요금 등 집행 잔액 6억 원 등 기상예보 부문에 9억 원, 백령도 리모델링 공사 낙찰 차액 9억 원 등 기상관측 부문에 17억 원, 정보화사업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3억 6000만 원 등 기상산업정보 부문에 5억 원,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 운영 등 인건비 잔액 15억 원 등 기상행정 지원 부문에 20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7억 원으로, 국립기상연구소 및 기상통신소 신축 등에 총 6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차질로 인해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7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재력 부족으로 계약보증금 500만 원, 전기공사 사고로 인한 구상금 8500만 원,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및 항공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1100만 원 등 총 1억 원이 채권 현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 말 현재 수량은 1만 3943개이며, 가격은 1276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수량은 3791개 증가하고 가격은 40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 말 현재 가격은 4004억 원으로 2010년 대비 7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11년도 결산 종합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2011년도 세입에서 수납액은 2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무서를 통한 재산 추적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002억 원이며, 2705억 원을 지출하고 239억 원을 이월, 58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10년도 113억 원에서 2011년도 23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유는 지방청 청사시설 개선사업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10년도보다 86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립기상연구소와 기상통신소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비 이월액이 2010년보다 40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사업별 집행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집행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여 불용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이후의 참고자료, 2011년도 재무결산 요약 설명자료 그리고 2011년도 정책추진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기상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환경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2011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을 계획한 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집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융자 원금 회수금 등의 예산액이 과다 계상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세입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합홍보 사업의 경우 환경부 대변인실 주도로 통합홍보를 실시하면서 개별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 예산을 특정 환경정책 홍보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의 이·전용 절차 위반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집행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12개 중 5개 사업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여성 지원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홍보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문 중 물산업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물산업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지원의 경우 기업 인턴십 회사 지원비는 기업에 직접 지급토록 하고,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률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장임차료 과다 집행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부는 민간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정산을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 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에 비추어볼 때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보기 어려운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융자 원리금 상환 및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사업은 연례적으로 국고보조 이자액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초과 사용한 이자 차액을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질 부문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수질오염 유발, 지역 민원 발생, 자원화 미흡 등 현재 가축분뇨의 처리 체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무방류, 무악취, 100% 자원화의 3대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방식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국회의 증액 사업을 연도 중 감액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 행태로 보입니다.

폐기물 부문의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광양시 매립시설에 당초 예산 대비 6배 이상의 재원을 내역 조정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내역 조정으로 국회의 예산 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기물자원화사업에서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사업지가 변경되고 사업이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실한 상황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기 부문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집행이 부진한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테마 사업에서 일부 사업 목적과 거리가 있는 사업을 지원한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 부문에 있어서는 환경지킴이 사업의 경우 일반 수용비로 자연환경 안내원, 주민 감시원 등의 비정규직 급여를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사업은 사업비성 경비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국립공

원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증액한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소송 패소 비용을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확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있어서는 해외환경산업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해외환경산업센터 운영 중 발생한 임차료 수입이 세입으로 직접 처리되지 않고 센터 운영비로 사용되어 국가재정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환경산업 육성융자는 환경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환경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사업은 슬레이트의 조기 철거를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대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지원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환경협력 사업은 단위사업 내 예산집행이 세부사업 간 경계 없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부사업별 정확한 집행 규모의 파악이 어렵고 각각의 세부사업이 목적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을 위하여 2011년까지 총 52억 7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측정분석사는 29명의 자격증 부여에 그치고 있으므로 환경측정분석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4대강수계관리기금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석면기금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입니다.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시설 개선 및 보안강화 사업에서는 실제 준공기일을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편성 해서 남는 예산을 기상청의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과 관련해서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질의와 답변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첫 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부탁을 좀 드린다면 오늘 결산을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이 약간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자료 준비에 부족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결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이 대단히 늦어졌습니다. 원래 8월 달 내내 국회를 열지 않고 있다가, '방탄국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열지 않고 있다가 8월 30일까지 결산을 끝내야 된다라고 갑자기 박아 두고 일주일 안에 다 몰아서 다 끝내라, 저는 이런 국회에 처음……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다.

최소한 결산심사 2주 이상 걸려야 될 일정을 일주일 만에 아주 압축해서 예결산특위와 상임위가 지금 현재 동시에 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예결산 위원을 겸하고 있는,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참 아주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국회 쇄신, 바로 이런 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결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8월 달 내내 회의 거부하고 놀다가 이제 갑자기 일주일 안에 다 처리해라, 이런 것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비 반납하고 일회성 이벤트 하는 쇼가 아니라 실제로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회기 일정을 충분히 잡고, 제대로 심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

니다.

저는 7월 환노위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상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장비 라이다를 구매할 당시에 2개 사가 조달청 입찰에 응찰해서 48억 6900만 원을 제시한 케이웨더가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2011년 6월 3일 개최한 항공기상장비 선진화 포럼의 논의를 근거로 라이다 탐지거리를 10㎞로 결정하였다고 그 당시에 2012년 7월 24일 날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노위 업무보고에서는 항공기상장비 선진화 포럼 논의를 통해서 탐지거리를 10㎞로 정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본 위원이 근거를 밝히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7월 31일 날 서면답변에서 탐지거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상청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선진화 포럼에서는 전체적인 선진화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탐지거리 그 자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탐지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항공기상장비 선진화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포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이때 이 선진화 포럼에서는 탐지거리를 10㎞로 정했던 건 아닌 게 맞는 거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 업무보고 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10㎞를 정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고요?

○김경협 위원 예, 선진화 포럼에서 10㎞를……

○기상청장 조석준 그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좋습니다.

경쟁입찰을 유도할 목적으로 탐지거리를 애초에 15㎞에서 10㎞로 기준을 완화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케이웨더의 제품이 현재까지 6.5㎞ 정도의 탐지능력밖에 없고, 향후 납품시점에서 10㎞ 이상의 탐지능력을 갖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고 선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이웨더라는 업체는 기상산업진흥원의 심사단에서 일단은 다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서 조달청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단독응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그 이후는 조달청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업체들이 응찰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탐지능력에 대한 기준을 조달청에서 했다는……

○기상청장 조석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당시에 여러 기준을 통해서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결정해서 조달청으로 일단 넘겨서, 조달청에서 다시 한 업체만 돌았기 때문에 재공고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기상청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상청은 작년 1월 달에 기상장비 구매에 관한 모든 역무 대행을 저희 산하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조달청과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시면 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탐지거리 기준을 이렇게 줄인 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줄인 것은 저희가 기상청 내에 감독 과가 있고요, 그 과가 그 이해 당사자들, 거기 진흥원이라든가 그 관계사를 전부 다 모아서 선진화 포럼을 개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탐지거리 같은 어떤 결과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진흥원이나 또는 그때 맡은 과장, 현재는 국장입니다마는, 그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처음에 했던 기준을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재검토를 초기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게 기상청의……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그게 완화시킨 게 아니고요, 처음에 장비가 도입됐을 때는 전 세계에서 1개 사만 해당되는 그런 근거로 규격서가 작성돼서 불공정한 장비 도입이 우려돼 가지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규정 등등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더 자세한 대답이 필요하시면 그 당시 관할했던 국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줄일 경우에 그 이상이, 그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기준을 줄였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준을 줄일 경우에 항공기 이착

륙 과정에서 순간 돌풍이 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지요, 줄였을 경우에. 제가 잠깐 차트,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본래 현재 ICAO 규정에 의한 탐지거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16㎞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10㎞ 기준으로 바꾼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 전혀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6.5㎞의 탐지능력밖에 갖지 못하는 업체의 기술 수준, 그 장비가 선택됐던 과정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미 16㎞, 지금 현재 10㎞ 밖에서 벗어나서 10㎞ 이내로 돌풍이 불어서 들어오는 과정, 여기에 대한 돌풍이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저도 전체를 파악 못 하지만, 저희 국장이 설명을 드리면 아마 전체를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제시하신 표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조금 멀거든요.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예, 한번 해 보시지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입니다. 당시 기상산업정책과장으로서 기상산업 선진화 포럼을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기상산업 선진화 포럼은 고가의 항공장비인 라이더 장비의 도입에 앞서서 장비 규격에 의한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향후 추가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항공기상장비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탐지 반경 15㎞는 특정 회사의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5㎞의 규격은 특정 회사이기 때문에 항공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된 ICAO 규정이라든가 항공기상관측업무지침이라든가 공항 관제범위 등을 고려해서 탐지 능력도 구비하고 일반 경쟁입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예결위도 관련돼 있어서 시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예.

문제는 그렇게 탐지거리를 15㎞에서 10㎞로 줄이면서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입된 장비가 결국은 4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대단히, 예산낭비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입찰조건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단히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문제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48억 원을 들여서 정말 전혀, 깡통 기계를 수입하도록 압력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과정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짤막하게 드리면요……

○위원장 신계륜 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문제가 짧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설명의 지점이 있게 되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참고로 일본이나 홍콩 같은 국제공항에서도 10㎞ 범위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무튼 그게,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더운 여름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 우선 수석전문위원 보고 1페이지에 보면 통합홍보사업의 경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의 이·전용 절차 위반의 문제 다수 발생,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해외센터에 임차금을 썼다는 법 위반 이런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법적 징계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나온 얘기입니까? 환경부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현재까지는 징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완영 위원 국회 수석전문위원실도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 계속 환경부하고 사후 관리를 점검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수석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때 결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조치를 보고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처음에 통합홍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시게 되면 그게 환경부에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센터의 세입 조치를 직접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나, 그런데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변상 조치라든지 징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완영 위원 계속 검토해……

제가 보는 것도 국회 예산심의권 훼손이 심각한 사례, 확정권이라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가 증액을 해서 줬는데 환경부에서 이·전용을 통해서 감액해서 집행한 게 대표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여러 건, 쓰레기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중 총인처리시설 확충에서는 국회가 감액을 했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증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나서도 또 집행액은 증액한 것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가 증액해 줄 때 이렇게 다 못 쓴다고 하면 반영이 어렵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변경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그 지역의 상황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집행률을 조사해 보면 59.8%밖에 안 됩니다. 예산 조정을 안 했다고 하면 아마 실집행률이 25%도 안 되는 그런 저조한 상황이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지연 사업을 다른 타 사업에 배정하느라 했던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자체의 능력도 감안해서 국회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보육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 집행이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증액을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사실상 이런 사유로 미리 적정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증액해 준다고 받아 놓고 나중에 집행도 이·전용을 해 버리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증감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금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올리자고 하는 이런 게 있을 텐데 적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석면피해구제기금 집행 부진, 홍보도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요, 통합홍보…… 제가 석면피해 홍보 내역을 보면 보존협회, 서울신문, 기금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참, 석면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석회석 광산이나 그런 주요 지역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언론만 통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의료기관 같은 데를 홍보를 해도 오히려 나을 텐데 실제로 찾아가는 홍보가 아니라 언론에서 하니까 하고, 빤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얼마나 났습니까, 이게 실제로 집행하는 데?

○환경부장관 유영숙 2011년도에는 저희가 시행 첫해여서 불용률이 좀 높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78.6% 불용률입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리고 홍보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홍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료기관 이런 기록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홍보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석면피해자의 대부분이 노령자들이 많습니다. 60세에서 8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잠깐 보세요.

환경보전협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신문 인터넷 배너 게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보겠어요. 홍보가 안 되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시행 첫해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통합홍보사업도 문제 지적이 있었으니까 사업에 맞는 홍보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특히 석면구제기금도 지방자치단체 부담 10%를 제대로 못 해서 집행률이 낮은 점도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인정은 해 줬는데 지자체 부담이 없어서 국가 부담 90%도 안 주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향후에는 지자체에서 구제급여를 아주 조속히 지급하도록 저희가……

○이완영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0% 지자체 부담을 못 하면 나머지 90%도 못 주고 있나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현재는 정부분 90%를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10%는 지자체에서 받아서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 시행 첫해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점차 보완을 해 나가고 또 맞춤형으로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마이크로 나와 보십시오.

지차체에서 연말에 예산 남으면 보도를 안 뒤집어도 되는데 뒤집어 가지고 예산 낭비한다는 것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4/4분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이완영 위원 원래 예산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것들이 대부분 다 외자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자 장비는 연초에 3개월 정도로 장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말쯤 되면 대충 나오잖아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이완영 위원 그러면 조기에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그래서 앞으로는 전해에 장비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완영 위원 아까 외국 장비 운운하셨는데, 보세요. 4/4분기 집행 실적을 보면 컴퓨터도 11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일부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장비 구입 수수료, 소액기자재 이게 뭡니까? 다른 장비가 3, 4000만 원대인데 장비 구입 수수료 이게 2억 7000이에요. 이게 뭡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그것은 아마 보니까 장비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이 참 많습니다. 시간은 짧고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시간을 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은수미입니다.

유영숙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하수처리장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작년이었지요,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던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하루 최대 1만 5000t 이상의 생활하수가 방류됐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됐고, 환경부에서도 특정한 조치를 지금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500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이러한 곳에 무단 방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러한 생활하수는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했던 녹조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환경부장관상도 받았던 그런 곳에서 보도나 조사에 따르면 약 15년간 이상이나 무단 하수가 방류됐고, 그다음에 수도권 주민들한테 수돗물 1t당 170원씩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8월 21일에 환경부는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남양주시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그랬는데 이와 관련된 환경부의 현재 조치 내용, 향후 계획 등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정확히는 지난 8월 2일 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적발을 하고 나서 조치를 했고요, 현재는 환경감시단에서 추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5년 전부터 방류를 했다 또 저희가 구두로 조사한 바로는 2005년부터 방류가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은 환경감시단이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어쨌든 7년이든 15년이든 이런 문제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환경부에서 대응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환경부의 대답을 제가 봤더니 어쨌든 이 화도하수처리장이 정기점검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중에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장관상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비밀하수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환경부에서 대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감독의 책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의 대답만으로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초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방류구를 설치한 것은 적법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비상방류구였습니다. 홍수가 심하거나 또는 어떤 비상사태에 하수처리장의 용량에 추가로 하수물이 유입이 될 경우 비상 방류하는 그런 시설로서 비상방류구가 설치가 되었는데, 비상시가 아닌 또는 홍수 시기가 아닌 때에도 그렇게 방류가 되었다는 것은 그 방류구 자체가…… 저희가 이번에 북한강 수계 녹조가 너무 심하고, 항공사진으로 측정을 해 본 결과 삼봉리 지역이 이상하게 녹조 상태가 심하고 그래서 하천부터 뒤집고 찾아서 발로 다 뛰면서 적발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좀더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어쨌든 이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했던 것이 이번 예산을 보시면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예산현황에서 2011년에 원래 17억 83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다가 전액이 감액 조정되었단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런 감액 조정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물론 관리감독을 못 한 면도 있겠지만 증설사업이라도 제대로 됐더라면 지금 녹조로 인한 불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감액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11년 1월에 남양주시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2016년도쯤 되면 여러 가지 개발계획으로 하수처리 용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 남양주시가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화도하수처리장 용량이 4만 3000t인데 지금 현재 남양주시 인구 수 70만에 대해서 일반적인 하수량이 이만큼 나올 것이라고 계산을 해 보면 3만t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까지 이만큼 계획을 추가로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 19억 얼마를 예산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 남양주시가 자진철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그렇게 1만 5000t 정도 처리하지 않은 것이 버려졌는가, 그 원인은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하수관거

가 어디가 파손이 되어서 지하수나 이런 하천수들이 유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 4만 3000t 용량보다도 초과된 것이 비상방류구를 통해서 방류된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만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 추가로 증설하는 시설을 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언론보도에는 환경부가 남양주시의 예산 증액을 거부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환경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 장관님의 입장이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향후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1만 9000t의 하수 처리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증설하지 않고 그냥 다른 관리감독이면 현재의 하수처리 용량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이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아마 하수관거를 정확히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감시단이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남양주시가 증설을 요구했던 것은 2016년까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더 넣었을 때 그때 필요한 1만 9000t의 요구였으나 그것이 협의하는 과정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남양주시가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남양주시와 환경부가 어디가 문제가 돼서 그런지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환경부장관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미 겨울에도 녹조현상이 나타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란도 큽니다. 더 나아가서 7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고, 남양주에만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러니까 또 올해 겨울 혹은 내년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철저한 처리 과정 및 결과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이 딱 시간에 맞추어서 끝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갈 길이 많은데 정말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갑 이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 환경부 예산 및 결산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환경부 예결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세수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하라는 국가재정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하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고요.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거나 또는 세입 규모 추계를 적게 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세수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좀 소극적이거나 또는 직무유기적인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7709억 원이더라고요.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이 9148억 중에서 7709억 원인데, 이게 주로 경유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못 걷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제가 예전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자동차세와 같이 통합고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금을 걷고 또 집행하는 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특히 자동차 경유차량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과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이 하는 것을……

○이종훈 위원 그거 행안부하고 의논해 보셨어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동안 오래 전부터

환경부에서는 요청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산정방법, 기준, 관리부서, 이런 것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그런 것을 같이 걷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13년부터 15년까지 하는 중에 1차 연도에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넣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건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두 번째도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환특회계의 돈을 지자체나 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제일 큰데, 그리로 내려 주고 실제로는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인데 환경부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오염부지 매입에 190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결산할 때 190억을 집행했다, 그걸로 끝인데, 실질적으로 공단을 보면 136억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계속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공단의 똑같은 토양관리시범단지 조성사업도 15억을 내려줬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가뜩이나 세수 없다고 하면서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부처가 될 것 같고요.

세수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융자원리금 상환할 때 이자액 차액을 정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은 국고 반납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환경부가 철저히 확인을 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원리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는 환경부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일괄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은 반납하도록, 국고에 넣도록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그게 사업별로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처 내에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위임해서 하니까 그것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부 내에서, 부처 내에서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단 얘기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세 번째로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제대로 집행 못 하고 이월하면서 타 부처나 지자체같이 타 국가기관이 그쪽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환경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컨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것에서 타 국가기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종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환경부의 자산취득비로 지원을 해요. 그게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예산이라도 풍부하면 모르겠는데, 세수도 부족해서 맨날 문제를 가져오면 환경부 예산으로 타 국가기관의 환경 관련한 사업하는 데 지원할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환경 개선 관련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원론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하고 비슷한 게 지자체의 기후대응사업에 환경부가 예산 지원하는 건데 보면 대체로 지자체 청사 옥상에 무슨, 뭡니까? 화단입니까? 옥상녹화사업을 한다랄지 LED로 전등 교체랄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청사 관리와 관련된 문제이고 제가 보기에 기후변화하고 별 상관도 없고요. 청사 관리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이것도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세수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하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예산집행 구조를 가져가면서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큰 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셨던 전기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가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를 저감

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이고, 또 이것을 초기에 보급을……

○이종훈 위원 그 기관의 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환경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뭐 있나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되면 위원님 생각해 보실 때 모든 지자체가 다 그것을 나누어서 예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기업이 맡아서 해야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 친환경자동차를 빨리 보급을 해야 될 경우에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사업 자체를 환경부가 맡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받은 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근본적으로 세수 부족으로 계속사업을 이월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구조적으로 교정하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사후 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환경부가 같이 해 나가야, 부담금 징수 문제부터 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장하나입니다.

저는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일단 자원순환국장님한테 질문을 직접 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장하나 위원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가지고 해양 투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리고 받았던 예산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도 1일 거의 3000여 t의 미처리량 하니까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분량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죄송합니다. 하수슬러지 부분은 상하수도국장 소관 사항입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나와 주세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장하나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 이어서 하자면 하루에 3000t가량의 하수슬러지가 미처리돼서 민간 부분에 위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민간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그게 하루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위탁이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아마도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이쪽을 하는 것보다도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단가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1일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총액을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예.

○장하나 위원 그러면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그게 처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녹생토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만 원에서 십몇만 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적게 7만 원만 해도 하루에 3000t 정도 민간에 위탁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일까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어쨌든 3000t이고 톤당 처리비용은 제일 적을 때 7만 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물환경국장님한테 다시 여쭤 봐야 될 것 같네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장하나 위원 2010년에 '4대강 중점관리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물리·화학적 인 최적처리

및 최적관리방안’ 이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 화학적 인 처리의 문제점, 이게 바로 아까도 많이 얘기가 됐던 총인처리시설 여기와 관련되고 있는데,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응집제를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총인처리시설이 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것 맞지요? 화학적 처리 방법인 것 맞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도 저희 상하수도국 소관입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습니까?

‘응집제를 사용할 경우 약품비 등의 운전비 상승과 응집제로 인한 슬러지 발생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환경부의 하수도정책 추진 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체 슬러지 발생량이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문제는 올해부터 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므로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와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총인처리시설이 사실은 계속 화학약품을 써야 하고 운영비가 많다는 면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비용도, 하루에 3000t인데 전체 30%가 최대 증가한다 그래서 추가 3000t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매일매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총인처리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중복돼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인 처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천의 부영양화 방지라든가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처리 방법 자체가 응집제를 넣어서 슬러지 쪽으로 빼는 것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인처리시설도 가동했고 또 하수슬러지도 해양 배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아마 3000t 추가해서 더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이미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하나 위원 총인처리시설이, 응집제를 이용한 방법이 오염원을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게……

기존에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계셨잖아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예.

○장하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것은 경북대학교 민경석 교수님이 한국수자원학회 때 발표하신 논문인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화학적 응집처리는 설치비용 외에 별도의 운영비, 응집제 약품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또한 생물학적 질소나 인 제거 공법이 많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화학적 처리에 앞서서 생물학적 처리를 이용한 총인처리 강화’……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발전된 방법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낫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분명히 응집제를 이용하면 하수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 좀 있는데 굳이 기존의 생물학적 방법을 개선하기 이전에 급하게 총인처리시설 화학적인 방법만 도입을 해서 거기에 5000억이라는 예산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그 부분은 주장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방식이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써 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일부 있고, 그 부분으로써는…… 현재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방류수 배출기준을 강화한 총인처리기준이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현재 있는 생물학적 처리로써는 강화된 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통상적인 이론입니다.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총인처리시설을 265개를 만드는 데 5000억 예산을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몇 개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장하나 위원 현재 334기 이렇게 건설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약 70개, 69개의 총인처리시설이 늘어났는데 여기 추가 예산은 얼마나 든 겁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인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으로 배출되는 인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제 해도 불가피

하게 해야 할 시설들입니다.

○장하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4대강 예산에 265개를 만드는 데 5000억 쓰기로 하셨지요? 그런데 현재 334개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260개로 5000억 원을 나눠서 다시 일흔 개 정도 더 지었다 했을 때는 1000억에서 1300억 쓰는 건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여쭤본 겁니다. 총인처리시설의 기능을 물어본 것 아니고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처리 비용은 처리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산술적으로 더 늘어나는 그런 계산으로는 좀 어렵고요.

○장하나 위원 그러면 좀 싼값에 70개 더 지으신 겁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처리 비용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하나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얼마 더 들었는지 여기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놀라운 회의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12년 3월에 낙동강 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결과, 협의회 이런 회의를 하셨더군요. 여기에 관련된 정부부처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시고 낙동강 수질, 조류 오염을 대비해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낙동강 '하천 환경의 문제, 솔직히 답이 없다'…… 플러싱이라고 댐 방류량 조절하는, 그러니까 희석 방류하는 부분을 8월 11일에 발표하신 낙동강 수질·정수대책 여기에는 희석 방류를 주요한 해결책으로 계속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플러싱 효과도 도달 시간 등의 문제로 기대치가 낮다'는 것, 그리고 '낙동강 근본적인 수질개선 방법은 일정 수량이 하천에 흐르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도 해 놓으셨고요. 여기도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수역 정체가 조류 발생의 원인이다. 또한 오염원 관리 대책만으로도 수질 개선은 크게 기대를 못 한다. 2012년 초에 플러싱 조치 시에 하류부로 오히려 조류가 전이돼서 플러싱은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도 보면 내부적으로 오염원만 잡아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인처리시설도 근본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점에서도 아직까지 총인처리시설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지금 굉장히 영양화, 부영양화 상태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조류가 아주 쉽게 번성하기 좋은 조건의 부영양화 상태를 0.035의 농도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하천이 다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2, 그러니까 OECD에서 권고하는 것보다도 거의 한 7, 8배 정도가 높은 그런 기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비점오염원들을 관리하는, 흩어져 있는 오염원들을 관리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장하나 위원 OECD의 7, 8배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존에 그랬지만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2에서 2·3·4 되지 않았습니까? 0.2 0.3 0.4까지, 3등급 물까지 강화 잘 하셨는데요.

하지만 조류가 이렇게 번성을 한 것은, 총인처리시설이 됐으면 좋았지요. 그런데 물을 다 가둬 놓으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역 정체가, 이번에 낙동강 조류 번성한 원인인데도 8월 11일까지도 원인은 강수량 부족, 고온, 일조시간이 길다 외에 물이 정체되는 부분을 해명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환경부에서 얼마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자료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야 된다, 보를 열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지만 열지 못하고 국민들한테는 안심해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저번에 뵈었을 때 그러면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또 어떤 자료에는 이렇습니다.

취수장, 그러니까 물을 취수할 때는 고도정수처리 때문에 괜찮지만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조류

가 많았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이 산도가 높아져서 정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같은 회의자료에 있습니다.

제발 이런 것을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환경부가 안심해라, 안심해라 해 버리면 지금 국민들은 청와대고 환경부를 못 믿게 됐어요. 예전에 국민들이 그래도 선호하고 믿었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던 환경부가 그 위상이 정말 추락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괜찮다, 안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대책을 강구해서 뭐 총인처리시설이 답이다, 희석방조가 답이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회의에서 벌써 문제 제기한……

○위원장 신계륜 자,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제발 좀 바른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말씀을 간단히만……

○위원장 신계륜 말씀을 다음에 하시지요. 질의 요지도 다 들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원인이 서로 다르고 답변도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용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교 위원입니다.

갑작스럽게 결산 국회가 열리고 일정이 바쁘신데도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국회가 더 세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한 분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일정들이 다 얽혀지고 몇 개의 상임위나 특위가 동시에 열린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해서 행안부와 공동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징수비용도 증대되고 각종 폐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미 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 작업을 하더라도 한번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또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고지서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도들을 한번 만들어 내보시면 어떻겠느냐, 비단 부담금뿐만 아니라 각종 지식정보의 발달이라든지 향후에 납세자 주권의식이 강해 질 것입니다.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왕 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각종 방안을 마련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는 28억의 예산으로 올해 2500동을 목표로 해서 2372동을 완료했다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 봤는데요. 4억 6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자부담 발생 때문에 사업 참여 포기하고 집행에 대한 잔액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현재 지급되는 기준으로 하면 수백 세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처리비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건강증진 내지는 자연친화형 지붕개량사업으로 하면 이 불용액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지붕을 철거하더라도 개량할 비용들이 없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 이게 대체로 문제가 되어지는데 전체 예산이 물론 작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자연친화형 지붕개량사업으로 붙여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뿐만 아니라 개량하는 데까지 한다면 우선적으로 서민인 저소득층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예산의 상황들을 봐가면서 집행해 나간다면 지금 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체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서민들이거나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거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인데 이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아마 또 예산을 편성하면 남아 있는,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서용교 위원 거기에 분명히 아직도 많은 수의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가옥들이 있을 텐데 그 가옥들을 결국은 지금처럼 계속 불용액 남겨가면서 크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 개념규정부터 조금 달리하셔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약자들이 충분히 배려받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년도에는 제한되어 있는 여건, 예를 들면 철거비의 일정 부분만 국고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나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는 그런 주신 의견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환경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는 농촌지붕개량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가능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또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민간 계층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할 때 지금 현재는 지붕개량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앞에 제가 제안해 드린 것처럼 사업의 근본적인 어떤 개념규정이나 이런 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지붕개량사업을 항목을 추가하든지 해서 국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정한 시를 예를 들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의 경우에는 올해 보면 지붕개량사업을 100% 시비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시비 자체로만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사업 개념규정의 방법이라든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 자부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셔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서용교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이것은 매번 국회…… 이게 지난번 국회 속기록도 보니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던데요. 환경부 결산자료만 보면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 실집행 내용을 보면 지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62.7%, 2011년은 49.9%로 계속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총 423억 8100만 원 중에 159억 정도만 집행이 되어 있던데요. 어차피 상수누수율이 높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들을 평가해 본다면 결국 이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갔을 때 2014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끝날 수 있는가 지금 평가해 본다면 끝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들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업기간 연장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자체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를 보니까 강원도의 4개 군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율을 50%만 높여줘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장관님께서 국가보조비율을 높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아무래도 이제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자체 사업이다라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계속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당국에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에 한정된 이런 것 때문에 상수도관망이나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결국 또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관망을 통합하는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지자체들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저희가 효율성 제고에, 그래서 좀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 통합이행 절차도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서용교 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2010년부터 2014년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앞에 몇 가지 사전이행절차가 있습니다. 통합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그 부분이 늦어져서 현 시점에서는 이게 아마 2014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다 추진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러면 향후에 몇 년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이 부분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삼사 년 정도는 조금 더 사업이 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같이 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누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렇게 계속 가면 비효율성이라든지 문제들을 더 가중시킬 소지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까지 끌어도 되나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위원님, 크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 이행에 관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국고보조율이 근본적으로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부터 50%까지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율이 올라가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저희가 좀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재정당국이 노력한다고 지금 받아주고 있나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예, 추가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지난번에 수질검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관 수질공동조사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질측정 지점이나 측정지표 결정 그리고 채수작업 등 공동으로 실시한다면 조류원인도 지금 과학적으로 규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동안에 환경부가 좀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조류가 이번에 굉장히 심각해서 식수원에까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는데요. 조류주의보에 따른 인체의 유해성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조류 독성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어서 지금 아마 해외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다각적으로 조류문제 해결과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에 협의 모델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봐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좀 거버넌스 형태로 좀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한명숙 전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즉각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수질에 대한 문제는 민관 합동수질조사단을 의원님실에서 추천해 주시는 민간 전문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향후에 그런 독성물질에 대한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규정하는 그런 게 없어서 이런 WTO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좀 같이 논의하는, 미래를 대비해 논의하는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그것이 성공하면 다른 곳에서도 그런 거버넌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의 초점은 환경부가 자꾸 정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는 것에 대한 저는 남다른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수구역 특별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환경단체에서 출발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여기에 호응을 해서 과연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이 확산이 된다면 참으로 환경부가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외면을 하는 것에는 일정 정도 합리적인 요인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친수구역 특별법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가지고 상수원 수변구역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환경을 지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환경부담금은 오염자부담원칙,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두어지는데 이것은 1999년도에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기까지 13년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해서 이루어진 이것이 지금 깨지려고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변구역에 친수구역이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환경을 지키겠다는 정책 자체가 거의 변질되거나 무력화된다는 것에 지금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환경부는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대기질, 둘째는 수질, 그다음에 셋째는 폐기물로 크게 나누어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수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행령 특별법 5조에 보면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목적 외 훼손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지킬 수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뭐가 갈등이 되는지, 뭐가 충돌이 되는지를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식이 조금 인지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시행령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행령은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건데요. 본법에 따르면 수변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수변구역은 해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10조에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환경부의 물 환경을 지키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백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친수구역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물론 장관님은 안 계셨지만 환경부 공무원들이나 전 장관들은 이것을 위해서 투쟁했어야 됩니다. 지금 지켜낼 수가 없어요, 환경부가.

예를 들면 친수구역 특별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제33조에 보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로 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보면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이 특별법에서는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제처리하게 되면 이 시설들의 오염원 배출에 대한 규제를 국토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경부가 오염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완전히 오염관리를, 친수구역 특별법을 허용해 줌으로써 포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수구역 조성으로 인해서 수변구역의 난개발도 막겠다, 상수원의 수질오염도 막겠다 이렇게 답변은 하시지만 내용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수구역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환경부가 잘 검토하셔서 환경부 공무원들과 환경부장관이 똘똘 뭉쳐 가지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한명숙 전 총리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담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있는 것이 특별법에서 의제로 다루어져서 환경부가 다 포기를 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전 총리님께서 국정을 맡아서 해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아시리라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각 부처의 의견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고 특히 환경부는 규제부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런이런 친환경적인 목적으로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하신 답변은 사실상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또 그런 답변은 그냥 장관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장관님과 공무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기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이 중에서도 정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부탁합니다.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90%를 하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 공사, 개발사업, 하천 공사의 비용 보전 용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을 하면서? 그 빚 보전을 하는 요금입니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부는 국토부에다가 강한 제안을 해야 되고, 제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환경부가 확보해 달라 하는 것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의 100%는 아니라도 환경부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개정작업에 돌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특별법과 관련해서 무척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최봉홍 위원님 질의를 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 전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없어지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최봉홍 위원 그게 폐지되면, 전체 일반회계의 15% 정도 차지한다고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준비하시는 거나 그런 사항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 15%나 줄게 되는 큰 어려움 때문에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한 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13년 1월 1일도.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것으로 봐서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거기에 노력하셔 가지고 연장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예산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 규모를 전체 보면 항목만 5개로 갈라 놓았는데, 실제 일반회계는 전부 다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용이 되어 있으나마나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충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는 환경부가 계속해서 맡아 가지고 합니까? 농어촌 상수도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농촌만 담당하고 있지요, 도시는 지자체에서 하고?

○환경부장관 유영숙 광역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은 지자체에서 하고 농촌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지난해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지방상수도를 하면서 국고 3300억 지방 금액 해서 총액 한 5000억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를 해서 관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실제 주민 1인당 얼마가 투자됐느냐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투자됐어요. 주민 1인당, 특히 그 중에 어떤 지역은 1인당 6000만 원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상수도

관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런 문제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대안을 만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방적으로 상수도를 하는 것보다, 지금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도 상하수도가 낡아 가지고 전부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피해가 있는데, 지금 구제역 매몰지역 같은 곳에는 관 자체도 현재 하고 있는 그 관이 얼마나 유지될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급을 해 놓고 그 뒤에 그것을 관리하는 팀은 없지요, 시설만 해 놓고?

○환경부장관 유영숙 시·군에서 실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그러면 주로 예산은 환경부에서 내는데 관리를 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만 해 버리면 100% 다 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활용하느냐 거기에도 목표를 둬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최봉홍 위원 제가 내 보니까 대비가 그렇습디다.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예산 쓰시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죽 집행을 하고 다 했습디다. 그런데 수탁 대상하고 위탁기관에 따라서, 결국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끝내 놓고 난 뒤에 그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료가 되고 나면 업무편람을 만들든지 했는데 이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위탁계약에 명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지적을 잘 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단계부터 홍보효과까지도 업무편람에 잘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집행만 했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 점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예결위 참여라든가 기타 여러 위원회 활동이 중복되어서 많이 자리가 빈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점심시간도 많이 참여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한국환경공단 비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예.

○한정애 위원 이미 한번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논리적이지 않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6월 13일 날 환경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내정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입찰비리 수사 관련 직원 비위사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예.

○한정애 위원 그리고 인천지검의 수사 결과 통보에 나와 있는 대상자 중에서 6월 13일 승진내정자에 포함된 인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가 해당이 됩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승진자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이창 씨하고 신동석씨……

○한정애 위원 예, 맞습니다. 신동석 감사실장하고 이창 대기관리처장이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이 결정이 되지요. 그런데 승진 결정한 바로 다음 날인 28일 날 승진내정자의 인사 문서가 시행되면 사실은 2명의 비위사실 통보자도 승진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다시 한번……

○한정애 위원 27일 날 입찰비리 수사 관련한

직원 비위사실 통보를 받으셨고요. 일단 승진내정자를 6월 13일 날 결정을 하셨는데 그 승진내정자와 관련된 문서를 28일 날, 그러니까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다음 날 문서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문서 시행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도 불구하고 승진 인사를 했다고 그러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승진 인사는 그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결재가 되고……

○한정애 위원 아, 그런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그분의 비위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의 근무성적이나 근무기간이나 근무연한을 따져서 당연히 승진 서열 명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 인사를 결정을 하지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가 있었고 검찰 수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승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내정자로 정해졌다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비위사실 통보자는 승진 시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입찰비리 또는 설계 심의와 관련한 비리와 관련해서 환경공단의 파면된 사람, 관련된 사람을 합치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게 어떤 공공기관 1개의 기관으로 보면 그 기관이 한 20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파면자의 수와 거의 같을 만큼, 지금 숫자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파면을 당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승진을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시그널을 우리 조직원들한테 줄 수 있냐면 비리를 저질러도 승진하고는 관련이 없다, 해당이 없다, 내가 비리를 아무리 저질러도 그냥 꼭꼭 숨어서, 정말 철저하게 비리를 저질러도 들키지만 않으면 승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겠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한 위원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한정애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건 됐고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저희가 6월 13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인사 추천을 해서 승진 인사위원회를 했고요. 6월 15일 날……

○한정애 위원 예, 6월 13일 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승진 인사 추천을 하시는 것은 비위사실이 통보가 안 됐을 때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예, 그리고 하여튼 그것을……

○한정애 위원 비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동안 공단에 혁혁하게 공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승진 연한이나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서열 명부에 의해서 승진 인사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비위사실을 통보를 받았을 때는 그 인사의 내용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승진자에 대한 결정에 대한 확정 결재가 있었고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승진 전자게시판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했고 27일 날 그 전날 검찰의 통보를 받았는데 이 인사발령이란 것은 보직에 대한 발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6월 15일 날 이미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6월 15일 날 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아닙니다.

○한정애 위원 그게 문서가 시행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 문서가 시행된 것은 아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6월 15일 날 승진자 결정을 제가 확정해서 결재를 했고 그때 전자게시판에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은 승진예정자라고 합니다. 승진예정자와 승진일자가 구분되어서 나갑니다. 그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법은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에서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정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위를 저질렀다고 확인이 되어서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미 승진인사위원회, 승진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그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승진심사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승진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승진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장관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경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승진인사 내정이 됐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다시 재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봤을 때 산하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종진 경영지원본부장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임원이세요. 본부장은 임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죽 확인한 바에 의한 환경공단의 인사규정 자체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할 때 보면 별도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없어서 그냥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제8조에 보면 임원이 재직기간 동안에 청렴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종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는 임원이기 때문에 그냥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왜냐하면 징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똑같은 본부장급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다 같은 본부장이 어떻게 제3의 본부장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인사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그런데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본부장의 청렴의무 위반의 내용 자체가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사회를 열어서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종진 본부장의 경우는 어떤 벌금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고 단순한 직무 관련자와의 청렴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직원행동강령 34조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임직원 모두에 대해서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한정애 위원 이 관련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신 적은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사후에는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정애 위원 아니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그게 지금 아직 그 이후에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 나고 나서는 말이지요.

○한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흔히 말해서 공정하게 징계의 양정이나 비위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비상임이사 정도가 들어가서 공단과 관련 없는 임원급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만이 그래도 논의조차를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다같은 본부장으로 계신 분이 그중의 본부장 하나를 놓고 거기에 대한 비위와 관련된 위반 여부를 또는 혐의 여부를, 징계의 양정을 결정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그 제재수준을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청렴계약과 관련된 운영규정이 그렇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해당 부분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보기에도 관련 규정에 다소의 상충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기존에 이미 승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1분만 쓰십시오.

○한정애 위원 승진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의 적절성 여부와 그 여부를 따져서 다시 한번 재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해당자가 사실은 또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의 위원이었다는 사실, 물론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감사 업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비위자에 해당이 되면서 비위자가 그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반부패 대책 추진을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는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유영숙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 2009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반경 1.5km 내 구역의 땅을 매입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김성태 위원 작년 토지매입비 미집행액이 53억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환경부 결산보고서에서는 190억이 전액 다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결산에 환경부에서는 190억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장관님 보십시오.

환경부는 190억 땅 매입하는 데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실질적인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13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3억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133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3억 1000만 원이 집행이 실질적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환경부는 그냥 190억 다 집행된 것으로 조금 전에 장관님 답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토위에서도 보면 국도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위탁기관이 감정을 통해 가지고 예상보상비를 산정한 후에 예상보상비의 그러니까 120%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를 위탁기관으로 이관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연도 말에 그것을 미집행금을 환불받아 가지고 이것을 불용 또는 이월처리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상수원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 집행 절차가 해당 지역 환경청에서 집행하고 미집행금의 불용 또는 이월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토지매입비는 직접수행경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김성태 위원 부처가 원래는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또 당해 환경부 부처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위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렇지만 회계연도 말에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을 위해 미집행금은 부처가 반환받아 가지고 이것을 불용이나 이월처리를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정화사업은 약 48.6%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비도 지금 현재 160억이 또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도 환경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지금 현재 땅을 매입하고 있을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공단에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토지 매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토지 매입이 제대로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그 결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190억을 다 집행한 것으로, 다만 실질적으로는 공단에서 한 53억 정도가 미집행되어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돈이 공단에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불용이나 이월처리하려면 환경부로 올라와야 돼요. 타 부처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 원칙에 맞게 이 미집행금을 회수하거나 또 회수해 가지고 불용처리하거나 이월시키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지적하신 대로 집행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다음 달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올여름 관계자들 다들 휴가도 못 간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제주도 국고보조예산은 자본보조예산이었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실행내역을 이렇게 보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도 이게 지출이 되고, 또 생태탐방로 스토리텔링한다 해 가지고 이 비용도 여기서 지출이 되고, 또 모바일 안내 시스템 이런, 한마디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집행을 한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또 경상보조비로 약 7억 5000만 원을 세목 조정해 가지고 했거든요.

이 WCC 조직위원회 출연금 예산 중에서 7200만 원을 또 WCC 총회 업무지원을 위한 IUCN 파견관의 임차료라든지 여비 등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운영비까지 썼다고 하고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스토리텔링이나 모바일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전체 행사, 공식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매 4년에 한 번 열리지만 동북아 지역에서는 또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180여 개국 전 세계에서 오시는 지구촌 분들에게 제주를 좀 더, 또 대한민국을 좀더 잘 홍보하는 것도 성공적인 행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김성태 위원 예,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이, 참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모바일 안내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왜 이런 사업비는 지방비라든지 또 WCC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본보조예산으로 썼다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워낙 큰 행사 치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이 좀 일부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향후에는 더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하고 또 WCC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집행 내역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48억 6500만 원 예산 전부를 갖다가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돈을 못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또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밸런스가 안 맞은 것입니다. 워낙 뭐 경황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부장관 유영숙 11년까지는 그리 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전액 예산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에 충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통합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환경공단 환경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경공단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동료 위원들께서 환경공단의 부패 비리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좀 실체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공단은 들여다볼수록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공기업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사장님 나와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공단 발주 입찰비리사건 관련 뇌물 공여업체 현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저는 이것을 보면 환경공단에 이것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패와 비리가 구조화되어 있고 그러다가 지금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국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보십시오.

효성엔지니어링에서 보면 충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포항시 하수슬러지, 창녕의 대합일반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 남양주시 화도읍 공공하수처리장, 청주시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그다음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포항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 제일엔지니어링은 새만금유역 하류식하수도 월류수, 이게 어떤 특정사업 분야만이 이렇게 비리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이 저는 아무튼 크게 작게 다 이렇게 비리로 다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당시에 물론 검찰에서 처벌도 30여 명이 연루되어서 15명 정도가 구속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박승환 이사장님께서 우리 이명박 정권의 굉장히 실세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런 부패사건에 비교해서 정말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이면 이사장이 퇴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천지검에서는 이런 수사결과에 따라서 '환경공단 발주 입찰비리수사 관련 뇌물 공여업체 현황 통보' 이런 것을 문서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감사 결과를 보면 환경공단 고위직급 대부분이 업체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거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환경부의 감사관실도 정말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종진 경영본부장을 비롯해서 15명한테 징계를 내렸는데요, 1급이 9명이고, 그렇습니다, 1급 9명, 2급 3명. 그러니까 8월 8일자 징계 받은 직급의 직원을 보면 지역본부장급인 1급 직원 36명 중에서 25%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둑놈 소굴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거기다가,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내가 또 조사를 해 봤더니, 환경공단에서는 비리·비위를 저질러도 승진합니다. 본부장급에 비위자가 4명인데 승진자가 3명이에요. 그리고 1급도 비위자가 15명인데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공기업이 있습니까?

아까 '검찰에서 연락이 늦게 와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내정이 됐었기 때문에 승진을 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합니까? 비리 통보를 받았으면 인사명령을 내렸더라도 취소를 해야지요. 검찰에서 통보를 늦게 해 줘서 내정했으니까 발표를 했다?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게 정당한 증언입니까? 제가 그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사장께서 검찰에서 그런 정도의 비리를 가지고 통보를 했으면 승진인사를 발표했더라도 철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요, 제가 지난 정부에 있을 때 농림부차관이 100만 원 받은 것으로 사표 낸 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어떤 조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버젓이 돈 받고도, 검찰이 저기해도 전부 다 비위자들을 승진시키고. 지금 본부장 4명이 아무튼 비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모양이에요. 이런 자료를 자세히 주지 않아서 그런데 내가 다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겠습니다. 비리의 책임자로 4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4명 중에 3명을 승진시켜요. 1급도 15명 중에서 5명이나 승진을 시켜요. 비리를 잘했다고 승진시켜 주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것은 도대체 이사장님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고, 하위직 직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사표를 내야지요.
아니,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공기업에 이런 조직이 있냐고요, 이렇게 부패로 점철된 조직이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홍 위원님, 존경하는 홍 위원님, 저희가 턴키 비리 수사로 인한 결과 통보를 받고 환경부의 감사결과를 받아서 이번에 15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위로 처벌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각오를 천명한 것이 이번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홍영표 위원 각오를 천명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승진시키는데? 비리자들 다 승진시켰잖아요.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아, 이것 해먹다 걸려도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가 안 된다'…… 아니, 비리자들을 다 승진시킨 근거가 있잖아요. 크든 작든 추상같이 그런 문제를 했으면 무서워서라도 안 했을 것입니다.

박승환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임기성 씨라는 분이 이 사건에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돼요. 한 명 끼워 넣어 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 사람은 철회시키고. 그래서 임기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임기성 씨……

○홍영표 위원 코오롱글로벌이라는 회사에 가서, 자기 돈 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에 관련된 건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임기성 씨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요, 코오롱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관련되어서, 연루되어서 처벌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제가 어디에 근무하는지는 모릅니다.

○홍영표 위원 처벌을 받았는데, 코오롱글로벌이라는 회사에 가서 버젓이 일하고 있어요.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는 환경관리공단의 입찰자격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미 다 박탈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다 했습니다,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홍영표 위원 도덕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아무튼 계속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환경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거기 방문하셔서 야단치시고 그랬다는데, 그 정도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물론 이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시든……

아니, 저는 환경공단의 전체 임직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특히 이렇게 고위직들의 아주 구조적인,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부패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실 거예요?

그것은 출발이……

아니, 저는 이사장님이 계셔서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이것을 제가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자진사퇴를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진사퇴를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조직을 정상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해임건의를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일단 이런 사건으로 국민들 모두 염려하시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그렇게도 조치를 했습니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또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또 비리에 연루되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모든 노력을 그동안 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사장님이 우선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콧방귀 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국감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해임건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신관입니다. 신관 516호입니다. 516호가 제 의원사무실인데, 너무 공기가 답답해서 제가 여러 차례 확인요청을 해서 오늘 국회사무처가 저한테 제출한 국회의원회관 신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경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저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를 넘는 곳이 50곳 중에서 32곳이나 되고요. 국내 기준치를 넘는, 초과한 곳이 50곳 중에서 5곳이었어요.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1곳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성 질환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 점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실내대기질법이 강화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심상정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신관에 있는 여성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실내 대기질 기준으로 보면 500㎍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797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신관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면 국회의원 보좌관 해 가지고 한 2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농도에서 3개월 이상 노출된 사람은 집중력 저하, 심하면 호흡질환까지 나타난다고 해요. 이것 처음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관만 그렇겠냐,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별로 다르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가지고……

○심상정 위원 혹시 장관님, 신규 아파트라든지 신규 교육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 대기질 조사결과 같은 것 통계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심상정 위원 아니, 지금 혹시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예, 잠깐 말씀하세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정회석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조사를 한 게 있는지, 그 통계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정회석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가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측정……

○심상정 위원 자가측정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정회석 예.

○심상정 위원 누가 측정해요? 사는 사람이?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정회석 아니요. 사업자가 스스로 측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대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환경부에서?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정회석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신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벽면, 천정 그다음에 바닥, 다 친환경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자재가 환경인증재를 다 사용을 했는지도 중요하고요. 다 사용했는데도 실내 대기질이 이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기준이라든지 또 처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자재라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국회사무처에. '어째 친환경재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높으냐?' 물어 보니까 거기에 사무가구들이 들어오잖아요, 사무기기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 대기물질 방출 기준과 환경인증 기준 문제를 그런 점까지를 감안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내 대기질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대책은 기어가는데 현실은 날아가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실내 대기질 문제와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재 또는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대기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정회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이따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관께 묻겠습니다.

녹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이 녹조가 발생된 원인이 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유속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가뭄과 폭염 때문에 그런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생이 안 되던 것이 발생이 되고 또 그 심각성이 더 강화된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원인 분석과 통계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가 모르겠는데, 국립환경과학원 박석순 원장님 여기 계세요? 한국경제에 쓰신 글도 봤는데 여러 가지, 이런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또 통계를 가지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될 분이 일방적 주장으로 이렇게 시민단체의 입장을 묵살하는 이런 식의 논조에 대해서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저는 사실 어떤 원인이 주된 원인인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책임 있게 통계와 자료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유속은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유속에 대한 것은 제가 좀……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물환경연구소에서 유속, 유량을 측정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측정합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유속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있지요.

○심상정 위원 그런데 제가 3주 전에 유속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우리 과학원에 했습니까?

○심상정 위원 환경부에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자료는 우리 과학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과학원에 있든 환경부 산하에 있으면 환경부에 요청하면 다 줘야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협의를 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줬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왜 안 줬는지.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유속 관련된 부분은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체류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상정 위원 일단 자료를 달란 말이에요. 헌법상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달라는데 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내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지 대책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오늘 중으로.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협의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잠깐만 와 보세요.

무슨 협의가 필요하세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저희가 체류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유속이 결국 체류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심상정 위원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환경부하고도 상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를 내 놓으라는 얘깁니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체류시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류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유속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환경부가 낙동강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가지고 있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과학원에서……

○심상정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과학원에서 실시한 4대강 시뮬레이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나와 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시뮬레이션 자료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있으시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심상정 위원 그러면 낙동강 안동댐에서 하구까지 체류기간을 며칠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82일인가 그쯤 될 거예요.

○심상정 위원 예,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감 없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또 시민단체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시는 이런 글을 쓰셔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부터 요청을 했거든.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를……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신계륜 예, 말씀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4대강 보 간, 또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체류시간 자료를 주시고요.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4대강 실제 유속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작성한 경제성 보고서, 그것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에 노동부의 결산 심사와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꼭 보충질의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만 한두 분 받도록 하고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혹시 꼭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만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김경협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기상청장님께 질문을 하다가 좀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 이 관측거리를, 탐지거리를 10㎞로 결정을 어디에서 한 건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을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국장이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경협 위원 어디서 했는지 그것만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결정할 수 있는 거요?

○김경협 위원 아니, 어디에서 결정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탐지거리 15㎞ 이렇게 기준으로 잡혀 있다가 나중에 10㎞로 어디서 결정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아까 말씀드린 선진화포럼에서 해당 관련된 이해당사자, 지난번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선진화포럼에서 결정한 건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7월 30일자 서면답변에서 '선진화포럼에서는 탐지거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선진화포럼의 논의사항, 회의록을 죽 훑어봐도 탐지거리와 관련된 토론은 전혀 없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도 선진화포럼에서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진화포럼에서는 없었다는데 이걸 어디서 한 거예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입니다.

제가 당시 기상산업정책과장으로서 그 선진화포럼을 주관했고요. 선진화포럼에서 구체적으로 10㎞로 줄이자는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선진화포럼에서 10㎞로 줄일 수 있는, ICAO 규정이라든가 항공관측 지침이라든가 관제구역,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선진화포럼을 주관하는 정책 과에서 10㎞로 수정하는 것이 탐지거리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단일……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선진화포럼에서는 논의가 없었는데, 그러면 담당 과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선진화포럼에서는 장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논의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ICAO 기준이 16㎞인데 당초에 15㎞ 기준으로 잡았다가 10㎞로 다시 이렇게 낮춰 잡았는데 어디에서, 어떤, 누구 기준으로 10㎞로 결정을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15㎞는 당

시 구체적으로 특정 회사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ICAO 규정이라든가 관제규정, 이런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적절한……

○김경협 위원 ICAO 규정은 16㎞로 나와 있는데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ICAO 규정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규정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부속서3에 보면 500m 높이에 1600ft로 해서 수평거리는 9540m가 됩니다. 그래서 10㎞ 이상 관측을 한다고 그러면 탐지거리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 회사의 스펙으로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리가 10㎞ 이상……

○김경협 위원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15㎞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그 15㎞ 기준이라는 것은 미국의 록히드마틴사 제품의 스펙을 그냥……

○김경협 위원 기상청에서 처음에 이 사업 입찰을 시작할 때 15㎞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그것은 기상기자재도입심의회에서 실제 일본으로부터 받은 규격서를 그대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었던 것이잖아요, 15㎞라는 기준이.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기상청 자체에서……

○김경협 위원 정해져 있었던 기준을 다시 재검토 지시를 해서 기존에 하던 입찰을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10㎞로 기준을 낮추어서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 10㎞로 결정한 근거도 없고 어떤 절차도 없고 기준도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10㎞ 기준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낙찰된 업체가 6.5㎞ 능력밖에 안 되는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업체가 나중에, 이후에 기술을 더 개발해서 설치할 때쯤 되면 10㎞ 이상의 탐지 능력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낙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현재 라이더 장비는 전 세계 2만 1000개 공항 중에서 단지 15개 공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하고 김포공항에도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요, 그 장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비 규격서에 대한 불공정 가능성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선진화포럼이 있었고요.

15㎞는 어떤 회사 제품이지만 10㎞는 ICAO라든가 항공관제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10㎞라는 숫자가 더 합당하다고 해서……

○김경협 위원 아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정해진 15㎞의 기준을 왜 낮췄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이 기상청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상청장님 맞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 항공청의 관계자들이 원래는 3대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도 2대로 줄이고요, 그런 예산에 관한 것도 불확실하고, 그 담당자들이 와서 이것을 한 회사 제품을 가지고 스펙을 정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국제 수준에 맞는 스펙을 확보하고……

○김경협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는 그런 걸 고려를 안 하고 정했던 건가요?

○기상청장 조석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담당자 선에서는 선정위원회 수준에서 15㎞를 완벽하게 정하지는 않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위원회든 절차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15㎞ 기준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청장님의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게 10㎞로 낮추어졌고 그다음에 업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전혀 성능이나 능력이 안 되는 업체로 정해졌고, 그 업체 것을 선정을 해서 결국은 성능도 되지도 않는, 실질적으로 이런 탐지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은 기계를 48억을 주고 산 겁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중간중간 스토리가 건너뛰어 있어 가지고……

○김경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 직원들이 보좌관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그 스토리가 다 이어져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그냥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시면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 스펙을 가지고 국가의 장비를 가지고 뭐랄까 큰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히려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지키고 또 그 업체는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납품을 하는 순간에 장비가 규격이 안 맞거나 성능 발휘를 못 하면 국가 예산은 한 푼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업체가 그렇게 무모하게 했다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국고나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이 공정한 기준을 통해서 정했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그 스토리를 다 이해하실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지금 계속해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절차도 정확하지 않고……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서 바뀠는지 나와 있지도 않고, 기준을 갑자기 그렇게 바꾸었는데 아까 어디 담당 과에서 바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시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졸속의 성능이 되지도 않는 기계가 낙찰을 받아서 예산 낭비를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해명하실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체토론을 종결하려고 그랬는데 주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합니다.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영순입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부터 환경부 농수산부 행안부 산림청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경우 2011년도에 편성된 25억 중 1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500만 원은 이월, 1억 6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집행될 13억 8700만 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었나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광주광역시가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해서 경남 거창군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朱永順 委員 환경부는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동 사업을 진행하는 4개 부처 중 환경부를 제외하고 실집행률이 제로인 곳이 또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실집행률이 0%인 곳은 없습니다.

○朱永順 委員 특히 환경부는 작년 결산 당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지적을 받았고,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사업을 정상화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결산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욱 심하여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제로입니다. 이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이라 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朱永順 委員 행안부나 농식품부, 산림청에서는 본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가장 부진한 환경부가 홀로 추진하려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환경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또 그런 것들의 친환경적인 처리 또는 대체에너지

생산 차원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본사업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면 2013년도도 예산 신청을 하셨나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2억 8000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시범사업과 본사업이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은 정부 주도로 계획을 했고 시도를 했었던 거고, 본사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추동력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주민 중심의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업기간도 시범사업을 2년으로 했었던 것을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의 필요성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3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상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 이런 농어촌 지역이 대상이어서 시범사업 때보다는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때는 50%의 국고보조율이었는데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70%로 높이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사업 내용과 시설은 변한 것이 별로 없고, 사업기간과 국고보조율의 변경만 가지고 본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폐수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사업 성공의 관건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바라 주민들과 또 지자체의 추진의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결국 시범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백화점 식으로 에너지사업만을 나열하여 주민 의사를 형식적으로 듣는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본사업 역시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지속적인 이월과 불용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많은 기회비용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또 그동안 저희가 고민했던 그런 바들을 잘 담아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시범사업의 성과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만 2010년부터 올해까지 예산과 결과만으로 본 성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본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최소한 10월에 성과 분석이 종료되면 거기에 맞추어 본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예산안 신청 기일에 맞추어 무리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업의 추진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과 예보지원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2006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월에 짙은 안개로 인하여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로 인해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위원님,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짧은 시간 안에 좀……

○朱永順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끝나셨습니까?

○朱永順 委員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충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지금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나중에 또 오신 분이 계셔서 그런데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장하나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에 이완영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꼭 보충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부가 해야 할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심상정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박석순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장님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낙동강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셔도 상관없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그렇지요.

○심상정 위원 그러신 거지요? 그다음에 2009년 1월부터 12년 8월 현재까지 4대강 실제 유속에 관한 자료도 있으시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강 한 가운데 흐르는 유속, 이런 것을 실측한 것은 아마 없을 거고 시뮬레이션 한 것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시뮬레이션 한 것은 있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시뮬레이션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유량조사사업단에서 지금 매년 하고 있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심상정 위원 그 자료를 안 받아 보시나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습니다. 와미스(WAMIS)라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습니까? 국토부 산하에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량을 측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좌진들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2011년까지는 매년 발간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 자료는 내년에 발간을 하거든요. 2012년 자료는 내년에 발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2년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 관련 연구원이니까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제출하는 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아주 좋은 주장을 하셨던데 서로 논쟁을 통해서 실제 원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뚜렷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장하나 위원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못 하셨지만 최대한 짧게 2분 정도 안에서 좀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아마 심상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류의 발생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류라고 하는 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우선 영양분이 충분해야 되고요, 또 햇볕을 받으면 수온이 적절해서 조류가 생성하기 좋은 수온에 맞추어져서 햇볕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한강 수계에서 크게 발생을 했던 것도 보면 그런 조건이 아주 최적으로 좋은 조건이 맞추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영양염류는 아까 OECD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0.035mg/L만 되면 언제든지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하천이나 호수에는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은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온의 경우는 7월 20일 날 장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8월 8일까지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강우량이 7.9㎜밖에 안 됩니다. 예년의 20분의 1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만큼 햇볕 일조량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조량을 계산을 해 보면 서울지역이 예년의 3.6배의 일조량으로 아주 내리쬐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그만큼 충분했고 수온이 올라갔고, 그것이 하루에 무려 30배, 50배씩 증식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상승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요, 제가 그냥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도 유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많은 국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요건 플러스 유속의 문제, 그러니까 하천이 호소화된 것이 이번 녹조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데, 환경부 당국에서는 그것을 주요 원인으로 한 번도 상정을 안 하시고, 8월 11일 날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원 수질·정수 대책에서 봐도 아까 말씀하신 적은 강수량, 고온, 긴 일조시간,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에게도 있듯이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낙동강 수역이 정체된 문제가 이 녹조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일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조류가 심하게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하나 위원 지금 수역이 정체됐는데……

○환경부장관 유영숙 수역이 정체된 것은 물론 상승시키는, 조류가 발생하도록 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낙동강 쪽을 말씀하실 텐데, 예를 들면 깊이가 얕고 작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휠씬 넓이가 넓고 깊은, 아주 깊은 항아리에 물을 받아 놓고 똑같은 양의 햇볕을 쪼인다면 어디가 더 영향을 받겠습니까?

○장하나 위원 원래 낙동강은 수심은 얕았지만 멈추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지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렇다면 수질·정수 대책에서 여러 가지 중의 하나 강조를 하신 것이 플러싱효과라고 해서 희석방류하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주요대책은 댐을 개방해서 희석방류하고 물을 흐르게 하자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댐을 방류하는 것이 주요 수질·정수 대책이라고 해 놓고 이번에 조류가 창궐을 했을 때 왜 보 개방을 안 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물을 그렇게 담아 놓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댐마다 목적이 있지요.

○장하나 위원 보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보통 농업용수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농생유공'이라고 합니다. 농업용수, 생활용수, 유지용수, 공업용수, 그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댐이나……

○장하나 위원 그러면 물이 부족해서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 개방을 못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낙동강 수계의 저수량이 예년의 80% 정도 수준으로 실제 저수량은 44%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물었다고 하셨습니다. 예년의 20% 강수라고 하셨는데, 기상청은 7월 가뭄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7월 20일 날 장마 끝난 이후에 저희도 기상청 자료를 받아 본 것이 8월 8일까지 20분의 1, 5%입니다.

○장하나 위원 어느 기간 말씀이십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7월 20일 장마가 끝난 이후부터 조류가 굉장히 극심했던 8월 8일까지……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비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창궐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전에는 조류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던 것이 그런 조건이 맞으니까 아주 급격하게, 하루에 30배 50배씩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도 왜 수문을 개방 안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상태와 또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런 용수에 필요한 양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류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조류가……

○장하나 위원 식수 위험이 그것보다 안 중요한 문제입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조류가 발생한 것은 지금 현재 정수장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깨끗하게 수돗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장하나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환경부장관 유영숙 물이 아예 없으면 그나마도 식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하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낙동강 수계의 댐-보 연계운영 협의회 회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일이 얘기하면 곤란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4대강 사업에 관련된 국토부, 환경부 모든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한 회의이고요. 여기서 분명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수장에 대구 이후로는 고도 처리되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산도가 높아져서 정수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맨날 신문 지상으로 환경부 해명자료라고 해서 '먹는 물에 이상이 없습니

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 왔던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 보고 안 받으셨지요?

직원도 보고 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자세한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장하나 위원 어떻게 불통이 되셨기에 이런 회의 내용이 장관님 귀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대상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시는 건데 아시는 한도 내에서 자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모르시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것은 가자마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수량에 따라서 이번에 충주댐을 방류한 것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평시에 110t, 초당 110t씩 방류하던 것을 이번에 북한강 수계가 그렇게 조류가 발생을 해서 팔당댐 이후의 서울시민들 식수 때문에 남한강 쪽의 깨끗한 물을 충주댐에서 540t, 초당 540t씩 그렇게 방류를 했습니다.

○장하나 위원 제 얘기도 좀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차에 말씀드렸지만 방류를 했을 때도 그게 미봉책뿐이 되지 않은 게, 그러면 그 오염물질들이 다 하류로 간단 말입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낙동강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충주댐 방류를 한 것은 북한강 수계는 조류가 많이 발생했지만 남한강 수계, 오히려 여주보 이포보가 있었던, 4대강 사업을 했던 남한강 수계는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장하나 위원 그러면 낙동강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낙동강에 대해서는……

……

○위원장 신계륜 이제 토론을 종료하십시다. 이것 지금 사실에 대한 파악도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토론을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명숙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질의 더 하실 분…… 종결을 아까 하려다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완영 위원 하신 다음에 한명숙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담당 국장님께 직접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8월 한 달 동안 지역구에서 농·축산민을 엄청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가장 큰 민원이, 환경부의 축산분뇨처리대책 이것 가지고 굉장히 불만과 어려움을 많이 해소했는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 5월 3일 날 종합대책을 마련했나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이 축산분뇨에 대해서 방향이 처리시설입니까, 재활용 자원화입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추진한 것은 처리시설 쪽 위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을 같이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완영 위원 처리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해서 만들어 주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이완영 위원 자원화 놔두고요, 처리시설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가동비는 개인이 부담하나요, 축산민이?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지자체에서 일단 부담을 하면서 아마 처리비 일부를 농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 코스트거든요.

또 이게 공동이 있고 개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이완영 위원 개인은 운영비를……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개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축산민은 그게 다 코스트에 들어가니까 시설을 갖춰도 무단 방류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하지만 위원님,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아니,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고시를 자꾸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미 이런 제한구역에 들어서 있는 축산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기존 시설은 가급적이면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완영 위원 이전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나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지정할 대상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수변구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향후 계속 일해야, 작업을 해 나가……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축산가는 '신고' 용어를 쓰기도 하고 '허가'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 신고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면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이완영 위원 보통 그런 경우도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지금 그것은 건축법 위반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새로운 규정안을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같이 협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그것 진행 중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도 같이 진행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약에 처리시설을 하면 환경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을,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농민들 얘기는 한꺼번에 정확한 기준보다는 조금 점진적으로 높여지는 기준을 정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입법예고한 이후에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고, 관련 단체에서도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완영 위원 점진적으로 높여 가는 방향으로?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공동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른바 님비현상입니까? 서로 우리 지역에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가급적이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선 해결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들, 방류하는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완영 위원 아니, 우선 그런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 데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거든요.

중앙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축산민도 인정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이냐 갖고 어느 주민도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 좀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파악은 하고 있

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 책임자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결론적으로 장관님, 이 문제는 환경 문제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농민들, 축산민은 식량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코스트가 있더라도 사실 축산하고 농업은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농·축산민의 어려움도 같이 헤아리면서,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검토해 주시고, 저하고도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하고도 잘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할 때도 좀 알려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물이용부담금의 납부거부운동 이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은 다 개발업자가 챙기고 그리고 수질개선비용은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 못 내겠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수돗물도 끓여 먹어라 그러고, 우리가 뭣하러 물이용부담금을 내느냐? 이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확산될 우려가 있어요.

이것이 확산되는 경우에 환경부는 엄청난 문제점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민관 수질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었듯이 이것도 물이용부담금의 방만한 운영 또 비효율성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확산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신설해서 제대로 물이용부담금이 차질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오염물질 발생이 비교적 적은 전답을 많이 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장이나 축사나 또는 음식점 이런 것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좀더 앞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하나 위원께서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총인처리시설은, 이것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물환경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물관리기본계획이지요. 이 기본계획이 2006년도에서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총인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대강을 하면서 갑자기 한 2년 동안에 22억 원을 들이면서 환경부도 총인처리시설로 5000억 정도 들입니다, 사천구백 얼마니까. 그런 정도 들여서 이것이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속도전을 펼치게 되는데,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그 결과로 그러면 총인이 줄었다, 그래서 총인이 줄었기 때문에 조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가 조사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아직은,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지금 다각도로 그런 조사사업이라든지 분석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얻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환경부가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 결과를, 5000억이나 들였는데 앞으로도 더 들일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추출해 내 가지고 그것의 실효성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총인사업이 너무 졸속으로 됐다는 것은 환경부 내부에서도, 종합 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유감이라는 얘기가 나온,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리고 졸속 설치라는 것이 공법의 방식이 결정되기도 전에, 공법의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각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을 전혀 반영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 227개 사업 중에 예산 조정이 무려 113개나 됐어요. 절반이 예산 조정이 됐고요. 변경도 거의 70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7건에 대해서는 총인시설을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했습니다. 그래서 7개는 취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2년 안에 5000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왜 이걸 했어야 되는지 저는 의혹이 좀 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인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2년 동안에 5000억이라는 많은 돈을 어디다 쏟아 부어야 진짜 효율적으로 이것을 없앨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점오염원에 대한 것은 하수처리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총인시설을 그렇게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점오염원을 잡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00억이라는 돈을 오히려 다른 쪽에다가, 그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장기적인 방향에서 알뜰하게 했다면 오히려 총인을 잡는 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환경부가 이런 것을 할 때 너무나 정부가 하는 4대강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완공돼서 가동되고 있지만 총인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방류 수질검사 그 시험 이후의, 가동 이후의 검사 결과 자료 로데이터, 실가동률을 있는 대로라도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서 5000억이 들어간 것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현재 있는 자료들이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비점오염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환노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되고……

○한명숙 위원 한 413억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데, 5000억과 413억이라는 것은 엄청 큰 차이인데 그것을 기본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을 2년 동안에 그렇게 졸속으로 쏟아 부었다는 것은, 결과도 지금 제대로 알 수도 없는데, 좀 환경부에서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협의기구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

○위원장 신계륜 위원님들 지금 결산 국회인데 시간은 짧고 하실 말씀은 참 많습니다. 국회가 일정을 이렇게 잡아준 이상 저희가 어떻게 연장할 수 없고, 노동부가 지금 1시간째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정애 위원님 질의를 짧게 듣고 종료한 다음에 노동부 결산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금방 존경하는 우리 한명숙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은 낙동강의 어느 지점 이하로는 보를 설치해서는 안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저한테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위치 이하에는 절대로 보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저희한테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런 것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추가로 들었고요.

이제 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책사업 추진단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Non-CO_2 라고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아마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009억 원 정도, 민간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단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기술과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선도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사업단입니다.

혹시 담당……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자원순환국장입니

다.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사업단은 잘 운영되고 있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현재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사업단의 단장이 누구로 계십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윤성규 단장입니다.

○한정애 위원 아직도 그분이 단장으로 계시는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환경특보가 누구인지는 아시는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윤성규 님이십니다.

○한정애 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의원실에서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이미 관련 업계가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의 환경특보인 어떤 특정인이 하고 있는 사업 또 사업단의 단장,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이미 윤성규 특보의 또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책연구사업의 단장이 특정 대선후보의 환경특보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가 죽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 허가번호 362번에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비영리단체 업무지원 업무편람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특정 후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실무 하시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백규석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어제 새벽에 그 자료를 저도,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확인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데, 환경부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이 단체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홈페이지에 보면 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가 정해 놓은 비영리 민간단체 업무 지원 원칙과 안 맞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애초에 녹색전국연합을 만들었던 분이 박준홍 씨라고 아마 아시겠지만 박근혜 후보의 사촌오빠십니다. 그래서 내 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연보호 정신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해 놓고 있고, 작년에 실시한 환경지킴이 교육에도 아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문제를 삼고 이것저것 따져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진행하는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정부 자금으로 박 후보 지지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백규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박준홍 씨라는 분은 어제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대표자가 친박연대가 출범하는 시기에 사퇴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분은 사퇴했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부가 정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의 원칙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백규석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환경부가 아직 홈페이지에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책연구단 사업단의 단장인 윤성규 단장 그리고 환경부 등록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이 특정 정당의 특정 대선후보를 돕겠다고 지지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부는 정부 기관이지 특정 후보를 돕는 기관은 아닙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과 같은 사태가 또 어떻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좀 실시하셔서 추가로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다음 정기국회 때 이어서 더 많은 발언들을 하시고 제안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환경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금 대체토론을 실시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성태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나와서 기다렸는데 회의가 너무 늦어져서 밖에서 기다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0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면서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3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3.2%인 53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합쳐서 당초 1조 3613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9억 원이 포함되어 총 1조 36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95.3%인 1조 3040억 원을 지출하였고, 10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고용보험기금 7조 3444억 원, 산재기금 9조 7819억 원, 임금채권기금 5987억 원, 장애인고용기금 3375억 원, 근로복지기금 4288억 원 등 총 18조 4913억 원을 조달 운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추진한 2011년도 핵심 고용노동 정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서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0년에 이어 지난해 5월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개발과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9월에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통해서 학력이나 학벌이 아닌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일할 기회를 보장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고용연장 지원을 활성화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임신·출산 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방안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기업의 명단 공표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47개 지방관서에 일자리 현장지원단을 설치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 해소해 나감으로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한편, 고용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과 불합리한 차별시정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둔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면근로계약·체불임금 최소화·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서 취약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재해 다발 업종별 맞춤형 대책의 추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산재 걱정 없는 안심 일터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등 상생 일터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장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부터 노사 상생과 협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표상으로는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고 또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력과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베이비붐 세대와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기 위해서 대상별로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와 함께 불법파견 시에 즉시 직접 고용의무 부과 등을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더하고 또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성숙된 노사관계가 노동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서 낙후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재해 없는 안심 일터 만들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시공여사(視公如私), 즉 공적 재산을 개인의 재물처럼 보고 이를 아끼고 절약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공여사의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회의 때와 달리 자리가 바뀐 이기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를 하실 때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적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운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원규모, 회계별 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재무결산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재원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총 재원규모는 19조 8596 억 원이며, 지출규모는 16조 6249억 원입니다.

재원별 분포를 보면 산재보험기금 49.3%, 고용보험기금 37%, 일반회계 6.6%, 임금채권기금 3.0% 등입니다.

회계별 구성은 총 1조 3682억 원 중 일반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구성은 총 18조 4913억 원 중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회계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억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원인은 수납률 제고 대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따른 수납률 향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682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0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3%가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54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원인은 보조금 정산 실시와 제도 변경에 따른 즉시과태료 부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수납액은 5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은 5억 원으로 주요 사유는 체납자 무재산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99억 원으로 과태료 미수납,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012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405억 원입니다. 지출액 1조 2405억 원의 구체적 내용은 취업지원 등 고용정책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31억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522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방청 인건비 111억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42억 원이며, 이월액은 86억 원입니다.

자세한 전용과 이월액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52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억 5700만 원이며, 2억 1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폐광 등 경영 악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미납 등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43억 원 중 523억 원이 지출되었고, 2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9억 7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이전지출을 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제주고용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주요사업비 및 기관운영비로 68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8억 8500만 원 중 34억 1000만 원이 지출되고, 14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수입결산을 보고드리면,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징수결정액은 18조 18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5조 3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조 7314억 원으로 고용보험기금 7452억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62억 원으로 고용보험기금 114억 원 등입니다.

지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지출액은 15조 3209억 원이며, 사업비로 11조 1067억 원을 지출하였고, 여유자금은 4조 2143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7조 9800억 원이며, 사회보장기여금 5조 6571억 원 등입니다. 수납액은 7조 2234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4억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7452억 원으로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출계획 현액은 7조 3444억 원으로 사업비는 6조 1790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조 2894억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5조 9339억 원으로 실업급여 사업 4조 1257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조 7121억 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68억 원 등이며 불용액은 238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이 7조 8805억 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5조 4878억 원 등입니다. 수납액은 6조 8435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7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조 30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결산 내역은 지출계획 현액은 9조 7819억 원으로 사업비는 4조 6590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조 3497억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4조 4938억 원이며 사업비 불용액은 165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이 1조 4961억 원이며 수납액은 4815억 원, 불납결손액은 1138억 원, 미수납액은 9008억 원입니다.

지출결산 내역은 지출계획 현액 5987억 원으로 사업비는 2936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218억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2597억 원, 불용액은 339억 원입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수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618억 원, 수납액은 3543억 원, 불납결손액은 10억 원, 미수납액은 65억 원입니다.

지출결산 내역은 지출계획 현액 3375억 원으로 사업비는 2522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046억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2497억 원이며 사업비 불용액은 2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은 4701억 원, 수납액은 4182억 원, 불납결손액은 34억 원, 미수납액은 48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 내역은 지출계획 현액 4288억 원으로 사업비는 1808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487억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기금관리비 및 사업운영비 등 1695억 원이며 이월액은 8억 원, 사업비 불용액은 105억 원입니다.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 그리고 5개 기금을 통합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상세현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 말 고용노동부 총 자산은 18조 4582억 원이며 총 부채는 12조 12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6조 330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2011년 프로그램순원가는 10조 8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은 각각 7105억 원, 78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8억 원, 1116억 원이 증가했는데 관리운영비 증감원인은

인건비 144억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비배분비용 증감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평가손실 증가 등입니다. 비배분수익은 94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35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증감 원인은 자산처분 이익 감소 등입니다.

2011년 비교환수익은 11조 49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원인은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사회보험수익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재정운영 결과는 121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전년 대비 사회보험수익 등 비교환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자산변동표를 보면, 2011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조 28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1조 34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2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의 이전은 530억으로 전년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 조정항목은 4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 기말순자산은 6조 3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6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 검토보고서 요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전년도보다 개선된 편이지만 83.5%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보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미수납금 회수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재심사 기준에 대하여 보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충을 통해 지속적 존립 가능성을 높이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의 경우 사후 충당식 전용의 경우는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이 매우 부진한바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참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청년실업 문제를 중소기업에서 그 활로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예산은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과 그 일자리로의 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노사정책사업 중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의 경우는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내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지원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산 운용실적을 보면 여유자산 운용수익률이 0.61%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인력 및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 체계를 내실화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고용안정사업 중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금에 있어서는 사업집행이 매우 부진한바 취약계층의 취업을 장려하려는 사업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은 민간 위탁기관별 예산액 대비 취업실적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예산과 실적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여 그 개선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환급절차 간소화 조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고용평등실현사업 중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집행이 매우 저조한바 그 본래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

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지원의 경우 사업 집행 실적이 전무하므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사업 중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은 민간 활용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가산금 징수실적은 수입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8%에 그치고 있으므로 그 추계정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경우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회수금 등이 기금수입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바 회수금 등을 국고에 반납한 후 다음 연도 기금수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의 경우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44%로 매우 부진하고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고용률도 0.44%로 가장 저조한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78%로 저조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기준의 개선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있어서는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법인세 환급금 등 기금 수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징수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금 재정수지 파악 및 여유자금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법인세 환급금 등 수입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경우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어 검토보고상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국회법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합니다.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심상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할 이유가 좀 있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면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순서를 양보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 할 때부터 통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차관청으로 승격되는 데에도 제가 일조를 좀 했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통계 항목들을 추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통계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좀 많은 걱정이 됐어요.

지금 직접 조사하고 있는 통계가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심상정 위원 그래서 또 통계 작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104억 원이고 또 근로자패널조사까지 합치면 한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심상정 위원 제가 우선 노동부 통계를 보면서 조사대상이나 항목도 변동이 없고 표본 수나 조사주기도 같은데 조사 통계명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통계청 승인 통계 중에서도 이렇게 자주 바뀌는 통계조사는 있습니까,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통계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름대로 통계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또 신설하는 과정에서 통계명이 좀 바뀐 경우도 있고 조사주기, 대상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고용노동정책 수립 활용 관련해서 변화하는 여건들을 잘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조사 통계명이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통계는 기본적으로 시계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계열이 불가능하거나 단절되면 사실 그 자체로써 통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가 2008년까지는 매월 노동통계특별조사였다가 또 지역별 임금근로시간조사로 바뀌고 2011년에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바뀌면서 표본 수도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을 요약하면 고용노동부가 중기적인 노동통계에 대한 계획이나 전략이 없다, 그것 아닌가요? 예전에 이영희 장관 시절에 해고대란설 이런 것 나온 것도 이런 통계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봐요, 물론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통계명이라든지 대상이 좀 바뀌더라도 구체적인 항목별로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계열적인 변화는 계속 파악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개편을 했고요. 나름대로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심상정 위원 장관님도 인정을 좀 하실 것은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들이 데이터, 통계가 없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묻고 싶어서 사실은 앞에 서론을 한 건데요. 통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이게 지금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결산자료에 나오는 비정규직 이동경로조사와 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심상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25억 4000, 2011년도는 20억 7000, 2012년도에 17억 5000, 그러니까 이게 총 얼마 됩니까? 63억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통계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미발간으로 되어 있어요. 승인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조사규모도 굉장히 방대하고 조사주기도 다른 노동패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입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1년 네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클리닝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것이……

○심상정 위원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통계로서 의미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이내에……

○심상정 위원 아직 통계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심상정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됐습니까, 준비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2009년에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 4년 늘리려고 100만 해고대란설 유포했잖아요. 그것은 과장됐다는 것 임태희 전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하간 이 통계가 이런 맥락에서 34차,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2009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입법효과 평가체계 구축 관련 합의문에 따라서 2010년 신설을 추진했는데 2010년 이후에 63억 6000이나 들인 통계가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계의 의미가 없지요. 1년에 네 번 하신다고 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면 그게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게 맨 처음에 발표하는 단계가 준비가 잘 되고 잘 걸러져야만 그다음 번 주기 것이 같은 체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며칠 있으면 퇴임하실지도 모르는데, 퇴임하셔야 되잖아요, 정권 바뀌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하루를 일을 하든 이틀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언제 발표가 가능하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그러시지요.

간단하게 발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지금 자료정제 및 검증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조만간이라 하면 월내입니까, 주내입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이재흥 주내는 아니고 다음 달 중으로라도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심상정 위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지금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모든 대선후보들이 다 비정규직 얘기하고 있고 각 정당이 비정규직법안을 최1호 법안으로 다 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정규직 이동경로에 대한 실증적인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이재흥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가장 빨리 주시면 언제 주실 수 있어요, 실사보고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하여간 제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컨대 날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이재흥 다음 달 중으로 발표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노동통계조사에서 국내여비 집행실적에 보면 불용액이 1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통합되면서 표본사업체 수가 76만 2000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대상 업체가 방문 거절도 하고 출입 통제하니까 실제 전화조사나 팩스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품질보고서에서도, 통계청의 품질보고서에서 지적한 게 '현실적으로 전체 조사에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경우에 전화나 팩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고하셔서……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에서도 보니까 2010년까지는 74%였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45%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통계가 부실해졌다는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06년 이후에 통계품질진단에서 지적도 했는데 마이크로한 자료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공개가 되어야 여러 가지 연구도 되고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밴드 중에서 지역고용정책사업 같은 것, 이것 중요하잖아요? 지역고용정책사업은 마이크로한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지역고용 바로가기 뜨지도 않아요. 이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선 작년도 통계여비 불용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작년에 신설된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수행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방문 거부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여비가 결과적으로 불필요해서 불용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 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고용통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빈약한 것이 사실이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빈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날림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림으로. 제가 지역에서 봐도 그래요. 하여튼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현안 문제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부천 원미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경협입니다.

결산 쪽이 시간이 없어요. 검토를 할 시간이 없네요, 검토를 할 시간이.

장관님, 고용노동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 제출이 잘 안 됩니다. 장관님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내려놓으신 게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자료요구를 해

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이내에 정확하게 내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경협 위원 노동부는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지요, 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협 위원 아주 쉬운 요구입니다, 다 가지고 있을 만한 자료. 다른 부처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노동부만 특히 아주 자료에 인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비밀이 좀 많은 건지 아니면 장관님의 특별한 지시사항인지, 그래서 왜 노동부만 이렇게 자료를 잘 안 주시나…… 하여튼 이번에 자료제출 좀 몇 가지 요구해 놓은 게 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제대로 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노동부 산하 각 정부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15개 정부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들의 참여자 해서 보면, 딱 보면 특정인사 다섯 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박, 조모, 박, 또 이모, 김모 이렇게 다섯 분이서 한 분씩이 보통 최소한 3개 내지는 4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맡고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특정인사 다섯 분만 노동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전적으로 다 참여해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마도 특정인을 모시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각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이고 경륜 있는 분을 모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결과적으로 특정인은 여러 위원회에 겹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분을 여기도 모시겠다, 저기도 모시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협 위원 산재보상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죽 보면 각종 위원회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다섯 분만 계속 3개, 4개씩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노동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장 협조적이고 잘 맞춰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 그거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특정 몇 분에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전문가들 많은데 왜 이렇게 다섯 분한테만 계속 집중이 됐을까,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어서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보면 아주 특별한 분들한테만, 아주 소수한테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용역과제도 그렇고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특정인에게 계속 집중이 되어 있을까?

여기에 특별히 단골손님을 정해서 노동부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다양한 생각과 여기에 견해가 좀 다른 사람일지라도, 노동부의 견해든 아니면 장관님의 견해와 좀 다른 사람일지라도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각종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골고루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가장 최고의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시겠다라는 자세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코 저희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모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연구용역도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민간인분들도 참여해서 심사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다양성 그리고 저희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의 의견을 주시는 분을 모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현장방문도 다양하게 하고 예컨대 아주 예전처럼 어떤 각본에 의한 회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의 있는 그대로 생생한……

○김경협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계속 길게 하시면 제가 질문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짧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민간위탁업체가 대단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리업체들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영리업체들의 비중이 약 67%, 비영리업체가 3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영리업체들 중에서도 7개 업체가 거의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7개 업체가 특별히 아주 역량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썩 그렇지만은 않다 싶은 게 7개 업체와 노동부의 특별한 관계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영리업체들에게 이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이렇게 집중돼서 가는 게 과연 올바른 방향일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268개소 가운데 영리가 125개소이고 비영리기관이 143개소가 되는데요. 특정업체가 대부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서 잘하는 기관 중심으로 맡긴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더욱더 강화해서 문제 있는 기관들은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협 위원 물론 이런 업체 선정과정의 기준이나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게 선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뒷얘기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이런 경우를 영리업체에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지, 이후에 이렇게 해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리든 비영리든 저희들이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비영리업체로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비영리기관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반갑습니다.

장관님, 뜨거운 여름 잘 보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올해 폭염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우선 결산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현안으로 근로복지공단 추가업무에 관련해서 증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각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인력·조직 부분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 아니, 복지공단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심의 중에 있고요. 현재 특히 복지공단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퇴직연금 업무 담당 관련해서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진행과정을 좀 추후에라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완영 위원 국가기간전략직종이 사업주 단체들만 공모를 했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님 직접, 시간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 나와 보세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어떤 기준으로 추가로 주고 있습니까, 국가기간전략직종?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은 뿌리산업이라든지……

○이완영 위원 아니,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돈이 못 써 가지고 남은 돈을 추가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냐고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지금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동일한 전략직종 훈련을 유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훈련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훈련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는 훈련……

○이완영 위원 국가기간전략직종 있잖아요, 국

가기간. 우리 전통 직종 말이지요. 그것 지난번에 다 못 써 가지고 비영리사업주 단체로만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잖아요, 국가기간산업 훈련 직종?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혹시 컨소시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완영 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네. 담당과장님!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완영 위원 국가기간산업 중에 옛날 전통적으로 훈련기관에 주는 직종훈련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그렇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뿌리산업이라든지 신성장동력 직종을 위주로 해서 과거와 같이 훈련기관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얘기를 하는데, 담당 과장님 안 나왔어요, 오늘?

지금 그것을 제도 개선해 가지고 또 고용센터에 확인을 받아 와야지 훈련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하고, 그것을 다시 추진하는데 처음에는 비영리사업주 단체로만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지금 실무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국가기간전략직종 산업훈련은 북한이탈주민하고 특성화고 고졸자 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 사업주 단체의 훈련지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나중에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후속, 지금 주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연초에 신청받은 훈련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탈락된 순서대로 주면 좋겠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근면위 개최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올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고……

○이완영 위원 근면위원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일부 바뀐 분들 중심으로 상견례를 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겸한 회의를 7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타임오프 적용에 대한 현장 영향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적당한 때가 됐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이완영 위원 ‘적당한 때’ 애매하게 말씀 주시지 말고 지난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 교체사정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그런 것이 지나야만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이완영 위원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개최하려면 장관님 말씀대로 뭐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그러면 미리 지금부터 좀 현장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어떤 문제 제기, 현장의 조사를 미리 좀 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9월, 10월에는…… 늦어도 10월에는 저는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쯤 가능하면……

그때 열어 가지고 뭐 또 현장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러면 또 12월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현장조사를 하고 근면위를 개최할 때는 어떤 판단이 우리가 추가로 심의하겠다는 그 부칙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들과 상의해서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요. 산재의 경우는 사업주도 50인 미만인가요?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는데 농민이 산재나 고용보험

가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근로자 개념에 충족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완영 위원 아니, 지금 임의가입을 묻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임의가입상으로 요건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배제될 사정은 아닙니다마는……

○이완영 위원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임의가입 들어온 분들 통계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수요조사를 한번 어떤 형태로든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뜨거운 여름을 우리 지역구민들하고 보냈는데 굉장히 요청이 많습니다, 의외로. 농민이나 축산 물론 이 농민도 법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축산도 그렇고. 법인이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개인도 임의가입으로 한다면 안 터 줄 여지가 없지 않는가 하는 제가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장관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농민이건 축산, 어민이건 그런 자영업자 또는 중소사업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드려 주시고요.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취업장려수당 중소기업 빈자리 채우기인데요. 이게 지원기준도 취업 후 1월 경과 30만 원, 6월 50만 원, 12월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이 380억 원 중에 103억 원이 불용이 됐어요.

한편 지원자의 경우도 보면 4만 1000여 명 정도 신청해서 중도탈락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것도 또 중도탈락자 중에 근 50%가 1개월 안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주느냐 하면 3개월 되고 퇴직하는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채용장려지원금은 그때그때 이렇게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달째 얼마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주면 당장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6개월 기준으로 보면 6개월 되면 그때 퇴직할 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움도 모르고 지원도 퇴직할 때만 자기가 알게 되고, 또 실은 저는 이런 경우는 기존의 다른 고용지원금에 비해서 이것도 좀 늘려서 열악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사실 우리가 일하기 어려운 일자리거든요, 빈자리라는 게. 그런데 우리 정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말씀하신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지원하는 취업장려수당은 09년, 10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지금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09년도에는 매달 30만 원씩 1년간 36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지원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사업과 유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1개월 6개월 12개월당 3호 100만 원 해서 180만 원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위한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해서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민주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이채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때도 이미 SJM 사용주 측의 폭력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 한 바도 있고 답변도 오고 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부가 SJM에서 발생한 사용자 폭력사태를 현재 방조 혹은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노조법 2조6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4조, 특히 노조법 제42조제1항의 경우 쟁의행위는, 즉 파업이나 태업뿐만 아니라 직장폐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SJM 사용주의 직장폐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용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사용주의 직장폐쇄가 목적이나 요건이나 뭐 하여튼 이런 예를 들어서 노조가 부분적으로 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용주의 직장폐쇄를 현재 불법, 여기서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수반한 사용주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고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SJM 사용자의 불법적인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는 현재 노조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SJM 노조의 파업도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SJM 사측의 직장폐쇄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찰을 비롯해서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JM 사용주가 폭력을 사용했음은 저희 환노위 여러 위원들께서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계약서도 제출했고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일 뿐만 아니라 허가취소 등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폭력을 수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현 SJM 사용자가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고용부장관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요, 누가 됐건 어떤 이유가 되었건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은수미 위원 예, 그러면 SJM 사용주가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를 한 사실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한 주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수미 위원 사용주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환노위에서 도급계약서까지를, 컨택터스와 SJM이 계약한 도급계약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SBS에서 민홍기 팀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채증 자료까지 이미 국민들한테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SJM 사용주는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확실하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1년 5월 26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채필 장관후보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답변이 굉장히 빠르셨더라고요.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서 파업의 주체, 목적은 여러 가지 노조법상 요건을 갖추었지만 공장시설을 점거해 정당한 행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재빨리 답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SJM 사태에 대해서 경찰도 답변을 했고, 사용자도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채증 자료에서도 폭력을 어쨌든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치 노조의 불법에 대해서는……

○은수미 위원 아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주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조의 불법에 대해서는 즉시 얘기를 하면서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마치 더디게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노조나 조합원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 법적인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법을 위반해서 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은수미 위원 7월 27일 날 발생한 사안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23일인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SJM 사측이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를 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요, 책임져야 될 분이 책임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위원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를 했다

혹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권혁태, 아마 책임자 분이 그러시지요?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질의 취지가……

○은수미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 봤습니다.

노조법 2조6항에 따르면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4조 및 42조1항에 따르면 이 쟁의행위는 결코 불법적인 폭력을 수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JM 사측의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지난 한 달간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채필 장관께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권 국장님께서 아마 잘못 모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사측이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를 했다 혹은 사측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직장폐쇄를 SJM이 신고한 이후에 직장폐쇄 이후에 농성 중인 사업장 내에 체류 중인 근로자들을 물리력을 행사해 가지고 쫓아낸 것은 그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직장폐쇄 자체를 폭력을 수반해서 했다고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놀랍네요. 이것 쟁의행위지요, 직장폐쇄가.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직장폐쇄를 하는데, 쫓아내는데 사용주가 폭력을 썼다, 이것은 다른 거다? 쟁의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폭력을 쓴 것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십시오. 사용주가 폭력을 썼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맞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고용부가 보시기에 사용주가 쓴 폭력행위를 고용부는 현재의 노조법상 뭐라고 봅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것은 당연히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은수미 위원 노조법상 위법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것은 노조법상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노조법상은 직장폐쇄와 관련시켜 가지고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노동자가 파업을 했을 때 만약 폭력을 써서 누군가를 쫓아냈다, 그것은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직장폐쇄를 한 것과, 직장폐쇄 공고문을 붙이는 것과 사용주가 직장폐쇄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수반해서 쫓아낸 것은 다른 거다, 특히 후자는 '폭력을 쓴 것은 노조법상 위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것이 노동자일 때는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판단한 근거에 따르면. 그러면 노동자도 파업을 할 때 만약 이러한 폭력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노조법상 폭력행위가 아니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채필 장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2011년 5월 26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채필 장관후보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그다음에 2011년 6월 16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방문에 따르면 '불법파업에는 노조간부와 노조원의 책임이 따른다'라고 항상, 매번 있을 때마다 발언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얘기하세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직장폐쇄에 폭력이 수반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폭력을 수반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 폭력에 가담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조사 당국에서 엄정하게 가려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수미 위원 아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사용자가, SJM 사용자가 폭력을 수반해서 직장폐쇄를 했다 혹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직접 보고를 하고 말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은수미 위원 아니, 받지 못하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부 권혁태 국장님, 그 이하 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홍영표 1분만 더 주세요.

정리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이채필 장관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 달이 지난 사태였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고용부는 장관에게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고 지금 장관은 '추후에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좀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니, 위원님.

○은수미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질문 마무리 지어 주시고 답변하세요.

○은수미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용부가 SJM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자들은 쫓겨나 있는 상태고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가 전 국민한테 공개된 이 순간까지 지금 장관은 저런 답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장도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질문으로 질문하겠고요. 청문회에서 뵙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답변하실래요?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짧게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노사 누구를 막론하고 폭력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상에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누구를 막론하고 방조하고 있다라든지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위원님, 가급적이면 짜 맞추기 신문을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토를 다시던데요. 이게 왜 짜 맞추기 신문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수미 위원 7월 27일 날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8월 23일까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짜 맞추기 질문이라고 하는 이채필 장관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표 은수미 위원님……

장관님, 제가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그런데 위원 질문에 대해서 '짜 맞추기 질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관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 답변의 취지도 아마 충분히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아니,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짜 맞추기 질문이다' 이런 식은 하지 마십시오.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입니다.

SJM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고용 관련 채권회수율이 낮은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 보호의 양대 축은 고용

하고 임금입니다. 그런데 고용과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복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작년 징수율이 41.5%에 불과하더라고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2007년에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 대신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패널티 성격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으면 이 제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근로자 고용을 보호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로부터 다시 구상권 해서 변제금 회수율이 지난 3년간 40%에 불과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서비스화되면서, 산업화에서 서비스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되는 측면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회수율이 낮은 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어땠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회수율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높이지 않으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강남의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라는 기업부동산이 3개월 잠깐 영업하고 임금 하나도 안 주고 없어지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제가 자료 부탁 겸 노동부의 노력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과 연관돼서 저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악화가 심히 우려됩니다. 정말로 우려됩니다. 작년 4월부터 보험료율을 0.9%에서 1.1%로 올렸지요? 제 말이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4월에 0.9에서 1.1로 올렸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다음에 내년 계속 걱정이 되는데, 먼저 이것은 여쭤 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세입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인가 예상이 되실 거고요. 지출에서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관련 사업들에서 지출을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예측을 해서 재정이, 적립금이 0.4에 그치는 비율이 5년 후에는 얼마, 10년 후에는 얼마 이런 것을 재정추계를 해 보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실업급여 지출액이 전년도 2조 8000억에서 갑자기 4조 1000억 원대로 1억 3000억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에 고용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먼저 1차 올렸습니다마는……

○이종훈 위원 장관님, 저 질문할 것 많아요.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꺼번에 다년도의 효과가 나게 하려면 너무 많이 올려야 되고 해서 장기간, 수년 동안 연동해서 개선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올해 또 큰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모성보호사업도 제가 보니까 점점 지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대책보고서를 만드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모성보호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에서의 부담비율이 거의 98% 잖아요? 일반회계는 2%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재부와 협의하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서로의 분담비율에 대해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재정추계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성보호 관련해서 지출액이 최근 들어서 매년 한 3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성격도 있고 원래는 국가 재정형편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부담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과연 고용보험기금 위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담해야 되는 논리도 조금 있고요, 직장의 안정에 도움을 주니까.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문제라

면 세금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협의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심에는 참여수당이 교통비, 식대 포함해서 30만 원 좀 넘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일종의 제한된 실업부조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전제로 해서 상호 의무보유제 정신에 의한 실업부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1만 6000원에……

훈련을 받으려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셔야 되는 분들은 훈련받느라고 생계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여기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3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그렇지요?

아니면 30만 원을 유지를 하려면 자격요건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야간이라도 또는 주말에라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득이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돈은 30만 원 주니까 중도포기자도 많고 이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도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도리어 민간위탁업체에, 2011년의 경우에 보니까 고용센터에서 44.3%, 민간직업소에 위탁한 게 55.7% 그렇던데 민간직업센터에 위탁한 경우가 고용센터보다 취업률도 높기는 한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비율은 낮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는데도 훈련시키기 전에 훈련받기 전 수준의 아주 저급의 일자리로 된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후관리도 잘 하고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임금체불자에 대한 사업이 생계비대출사업이 하나 있나요, 임금채권 말고 체불된 사람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 생계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게 근로복지진흥기금 거기서 하는 것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근로복지진흥기금도 있고요, 저희들 앞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발전적 개편 방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거기서 생계비 대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종훈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임금체불생계비 대부가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하는데 지금 임금 체불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마땅한 대안도 없으면 생계비대출사업이라도 사업을 좀 확대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노력은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 체불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는 주로 근로복지진흥기금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수요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더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체불시키는 사업주가 근본적으로 빨리 임금을 지급하게끔 하기 위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체는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장기적 계획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가시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진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디자인하고, 예산 배정도 더 많이 하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고용노동부가 저는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취업 의욕의 증진이라든지 또 무료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실업 상태로 전락하지 않게끔, 청년·중장년의 특성에 맞게끔 제도를 더욱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보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통합당의 장하나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가 어떤 경우에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다가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까?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판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판례라든지 학설상으로, 저희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어적·수동적 형태로 직장폐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노사가 조건만 따지고 보면 아무래도 사용자가 교섭할 때 대등한 위치에 안 있겠지요. 노동자 측이 훨씬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쟁의권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원래 사용자의 쟁의권은 그렇지 아니한데, 만약에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 측에 현격한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사 대등이 오히려 역으로 무너질 때 방어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견해가 다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대체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력이 꼭 어디가 약하다 이렇게만 획일화돼서 결론 내릴 수는 없고요.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각각의 사례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각각의 사정에 맞게 노사 대등의 원칙이 지켜지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노사 대등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지난 7월 27일에 SJM과 만도의,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직장폐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실 알고 계실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장하나 위원 지금 만도의 경우 8월 8일에 노동부에서 직장폐쇄를 철회하라는 지도를 했고, 8월 14일에 직장폐쇄가 풀렸습니다. 그런 반면 SJM은 현재도 계속 직장폐쇄 중입니다.

직장폐쇄 지도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만도의 경우에는 노조도 쟁의행위를 철회를 했습니다. 업무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직장폐쇄를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항이고, SJM의 경우에는 만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재 노조도 쟁의행위를 하고 있고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만도의 직장폐쇄 철회 지도가 쟁의행위를 멈추겠다고 한 입장 표명 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장폐쇄를 철회하라는 지도가 있은 후에 쟁의행위도 철회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만도의 경우에 노조도 쟁의행위를 철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사에다가 '그렇다면 직장폐쇄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도를……

○장하나 위원 지도가 사후적으로 일어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거의 같이……

○장하나 위원 아, 동시에 일어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상황을 감안해서, 즉 노조의 쟁의 의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동시에 직장폐쇄 철회 지도도 한 것이지요.

○장하나 위원 동시에 이루어졌네요. 신기합니다.

SJM의 경우에 6월 27일부터인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전면파업이 없었고요, 부분파업이 있었고. 많은 언론 1면을 장식을 했던 야만적인 폭력, 침탈이 일어났던 27일 전에, 26일까지도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한 달 동안의 부분파업이 사측이 직장폐쇄를 합리화할 만큼 현격한 어떤 노사 대등을 깬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쟁의행위, 파업이라는 것이 꼭 전면파업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장하나 위원 예, 그러면 그 말을 빼고요.

그러면 그때 직장폐쇄가 합법화될 만큼의 어떤 현격한 힘의 균형이 깨졌습니까, SJM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렇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JM의 경우에는 노조에서 쟁의행위를 철회할 의사가 없고 현재도 파업이 진

행 중인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항 행위인 직장폐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장하나 위원 사측의 직장폐쇄는 어떤 교섭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고요. 쟁의행위가 계속 됐는데, 교섭할 수 있는 어떤 노사 대등한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쟁의권은 아까같이 교섭의 도구나 아니면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는 쓰여서는 안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달 동안의 부분파업이든 전면파업이든 그 쟁의행위가 SJM 사측의 직장폐쇄를 합법적으로 여길 만큼 정말 사측에 현격한 피해를 끼쳤냐고 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위원님, 노조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사 측의 직장폐쇄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특히나 현재도……

○장하나 위원 여러 가지 판례에서 케이스마다…… 아니, 이게 너무 파업이 오래되고 사측에 정말 회사의 존립에 어떤 위험을 가질 만큼 그런 경제적·물리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는 직장폐쇄가 허용이 되지요. 하지만 쟁의행위를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직장폐쇄의 어떤 이유로 들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교섭에 있어서 노사 대등의 원칙하고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SJM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지금 노동부에서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지도도 했고 또 만약에 어길 시에 사법처리 예정이라는 게, 이게 한 열흘 전에 받은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는 SJM의 남아공 이런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건 대체근로 위반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에 응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해 놨고요.

그다음에 사측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못 하게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합리적인 직장폐쇄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라고 했고, 이 역시도 이행이 안 되면 사법처리 예정이다 이런 내용, 지금 현재 이게 노동부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들이 컨택터스의 불법이라든지 또 불법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요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례에서도 결코 부분파업을 한다라고 해서 직장폐쇄를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부분파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섭에 의한 노사 대등의 원칙, 아까 처음 동의하신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판단은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즉, 노조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직장폐쇄는 대항 행위로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판례로써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파업과 직장폐쇄 그 자체만 가지고 교섭력으로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

○장하나 위원 그러면 지금 SJM의 현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됐고 판단 내릴 근거가 부족하셨다는 겁니까? 시일이 좀 부족하셨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법령을 가지고 보았을 때 정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대항적·방어적 의미의 직장폐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도할 만한 근거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장하나 위원 방어적 직장폐쇄를, 뭐라고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로서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느 일방은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타방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장하나 위원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직장폐쇄가 1년이 이루어져서 생산이 뭐 1년이…… 죄송합니다. 다른 업체들을 좀 얘기할 텐데, 직장폐쇄를 한 1년여 하고 그 도중에 쟁의행위를 그만두겠다, 들어가겠다고도 하고 있는데도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그런데도 지도를 계속 안 하십니다. 노조가 와해되거나 이랬을 때 아주 뒤늦게 조치를 하고 직장폐쇄를 푸는 경우가 KEC나 발레오만도나 만도나 상신브레이크나 유성기업이 다 그랬는데요.

현재 SJM의 경우에는 노조가 아직 탄탄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지도를 미루고 계신 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만 된다고 그러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장하나 위원 지금 대체근로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지금 사측의 직장폐쇄가 아직 '합법적이다, 아니다' 볼 수 없다는 부분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도 '여전히 불법이다, 합법이다' 판단이 안 서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니요, 노조의 쟁의행위도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지요. 마찬가지로 회사 측의 직장폐쇄도……

○장하나 위원 그게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모른다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장하나 위원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판단이 아직 안 서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하나 위원 방어적으로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을 보시면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는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하나 위원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판례상으로도 그렇고 학설상으로도 그렇고 방어적 의미의 직장폐쇄는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요.

○장하나 위원 지금 SJM 사측의 경우에는 방어적 직장폐쇄를 한다고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로서는 SJM 사측의 직장폐쇄가……

○장하나 위원 방어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근거가 너무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장하나 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직장폐쇄 자체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직장폐쇄를…… 결정도 되기 전에 대체근로는 안 된다, 노조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직장폐쇄에 대해서만 결정이 안 났는데 이분들에게 그 부분만 판단을 뒤로 유보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장하나 위원 아, 방금 말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까지는 방어적 측면의 직장폐쇄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분명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사를 지도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하나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전혀 다른 두 가지 문장을 연달아 들었는데 공격적이라고 하신 겁니까, 방어적이라고 하신 겁니까?

○위원장대리 홍영표 마무리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격적 직장폐쇄로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방어적 직장폐쇄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도를 못 하지요.

만약에 방어적 직장폐쇄가 아니라면 제가 감히 그냥 있겠습니까? 다른 조치 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치하지요.

○장하나 위원 한 달 동안 조업도 되고 있던 사업장인데도 방어적 직장폐쇄로 보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적 요건이 지금, 충족 여부를 보시면 위원님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위원 아니, 많은 판례들이 있고요. 같은 법적 요건에 의해서 판단이 된 것들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다른 판례도 제가 하나 보내 드릴까요?

○장하나 위원 다른 판례의 경우에는, 현격한 다른 판례도 갖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아시겠네요.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SJM은 그런 경우라는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하나 위원 방어적인 직장폐쇄라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하나 위원 오랫동안 노동부에서 일하셨다는 게 참 의심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중립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저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규모가 약 4조 7000억 원, 산재보험기금의 경우 6조 2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운용 수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시간가중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1%도 안 되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주식 운용 측면에서 손실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고보기금과 산재기금 총 여유자산 10조 9000억 원 중 위탁운용자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20% 수준인 공무원연금기금이나 사학연금기금에 비해 매우 월등히 높았습니다. 고보기금과 산재기금 위탁운용자산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의 자산 운용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또한 양 기금의 실질적인 전담 인력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고용·산재 보험 여유자산 운용 관련해서 수익률로는 다른 기금에 비해서 높습니다. 예컨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수익률이 고용보험이 6.69입니다마는……

○朱永順 委員 간단히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그보다 훨씬 낮고요.

그다음에 담당 인력의 문제는 저희들도 부서를 설치해서 충분하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공무원 인력 증원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안정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꽤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낮은 측면도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펀드를 매입할 때 판매회사, 즉 증권사를 통해 자산 운용을 위탁하다 보니 증권사 판매수수료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약 44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그 금액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자산 운용 위탁문제 역시 고용노동부 내부의 자산 운용 인력 양성과 연관이 있겠지만 자산운용실무협의회의 경우 고보기금 및 산재기금 위탁 판매사인 증권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탁운용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좀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까?

○朱永順 委員 예, 간단히 하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수수료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판매사와 운용사 공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식의, 하여간 저희들이 수수료 절감 노력을 해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가 타 기금에 비해서는 좀 낮은 입장이고요.

고용보험 자산운용실무협의회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자산운용위원회와 전혀 별개의 조직이고, 자산 운용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실무적인 차원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에 맡기거나 의견을 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朱永順 委員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기금의 자산군별 투자 비중 허용범위는 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2011년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따르면 여유자산의 최대 22.05%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연중 내내 상한선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2/4분기까지는 주식투자 비중이 23.2%, 3/4분기에는 24.1%, 4/4분기에는 23.2%를 유지했습니다. 연말이 되어 가까스로 최대 허용치보다 낮은 21.49%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금 여유자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예,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1년도 중간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의 22%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여유자금의 분모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연말까지는 다 맞추었습니다.

○朱永順 委員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펀드의 환매 타이밍을 제대로 잡기 어려운 사정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75억 원의 기대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2007년부터 양 기금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적자 규모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비용만 늘어난다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의 모든 기금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실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고보기금과 산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유자금 운용을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적자 규모가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스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손실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운용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고용촉진 지원사업은 장기 실업자, 장애인, 청년, 여성 가장 등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난해 결산 내역을 보면 사업의 집행 실적은 매우 초라합니다.

지난해 고용촉진 지원사업은 572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의 35%를 넘는 201억 원은 다른 사업 재원으로 집행되었고 17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실제 집행액은 197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4%에 불과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고용촉진 사업이 자기 사업보다 다른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준 이유는 뭡니까? 고용촉진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의 금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사업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종의 사중손실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설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이 될 정도로 지급이 낮게 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초기 단계인 만큼 빠른 시일 이내에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그러십시오.

장관님 말씀, 고용노동부 자료 등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은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소 6개월을 고용해야 하고, 조건이 좋은 청년인턴제 등 고용노동부 타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급기간을 고용되고

나서 6개월 뒤에 지원하는 식으로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경향들도 있고 해서, 그 지원기간을 고용한 지 한 3개월 뒤에 지원한다든지 조금 반응성을 봐서 탄력성을 높이도록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하고요……

○朱永順 委員 그다음에 또 고용촉진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고용촉진 사업 지급요건에서 알선요건이 폐지되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朱永順 委員 2010년까지는 고용센터 알선취업이 지급요건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동 사업 알선요건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이나 여성 가장을 제외한 실업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朱永順 委員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용센터의 알선취업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령 알선받은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니 자격요건이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수료를 지급요건으로 하면 행정적인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겠지만 통상 6개월까지 소요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실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더 고민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최근 한 2년 동안에 노사갈등이 심각해지면서 특별히 특징적인 것이 용역 폭력진압이 너무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엄청난 부담을 국민들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용역 폭력진압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누구라도 막론하고, 사용주라도 노동자라도 폭력을 쓰면 불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에 불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벌써 여덟 군데서나 일어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무역에 상당히 적색신호가 왔고요, 많은 기업들이 성장률이 좋을 때는 확장을 했다가 지금 성장률도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이 이것을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용역 폭력진압 이런 것들이 자행된다면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동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노사분규는 기본적으로 법령 테두리 안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자율적으로 타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조금 간단하게 요점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최근에 이런 용역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유감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불법적인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벌을 주고 그야말로 그렇게 시행해 나갈 때 이런 일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명숙 위원 그것은 이제 노동부가 피해 가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노동부의 역할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 직장폐쇄 후에 보면 여기 SJM 측도 그렇고요, 복수노조 설립했지요?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남아공 출신 기술자 12명을 포함해서 80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는데요, 이거 불법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불법이지요? 이런 거 근로감독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들 불법적인 파견이라든지 또 대체근로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한명숙 위원 글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도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이행을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컨대 대체근로 한 부분들 돌려보냈고요. 불법파견 한 부분들도 중지를 하고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 원상복귀 했습니까, 그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안산지청에 가니까 사용주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을 할 때 이것을 문자로 형식을 갖추어서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하거나…… 우리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없다. 그냥 구두로 한다. 내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주에게 문자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노사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만도 측만 해도 직장폐쇄 후에 바로 기업노조를 복수노조로 설립을 했는데 업무복귀 조건으로 2300명 중 2030명에게 금속노조 탈퇴각서를 받고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한 적이 있어요.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한명숙 위원 잘못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틀렸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가입을 안 하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당연히 조사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조치는 하셨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치할 것입니다.

○한명숙 위원 불법은 확실히 없애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노동부가 근로감독 해 가지고 '임금단체협상 교섭대표권은 만도지부에 있다' 이렇게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섭대표 노조도 절차에 따라서 확보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존중, 그 유효기간 동안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관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징계를 했거든요.

하여튼 해지 통보를 했잖아요, 단체협약?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단협 해지 통보는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요.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자체를 하라,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남아 있는 유효기간을 감안했을 때 단협 해지 통보는 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그냥 이어서, 이렇게 지금 쟁의행위를 했는데 노조 간부를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징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회사 측에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한명숙 위원 예, 노조간부가 형사고발이 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법인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들이 당연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그냥 답변하시고 자꾸 넘어가시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불법인 것은 불법인 대로 노동부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답변에서 보면 그렇게 근로감독

해 가지고 다 원상복귀 시켰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남아공 출신 기술자들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조원들이 말도 못 하는 탄압을 받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정문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무실 노동자들도 생산라인에서 계속 근무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부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법대로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우리가 수사 중이다. 수사해서 하겠다' 하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과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요, 거기 있는 노조원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것도 한번 노동부가 조사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그 불법행위를 제대로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행실태 점검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한명숙 위원 노조 회의록 보면 사내 자판기 수입까지 조사를 하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이것은 사찰 수준이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차량도 반납하게 하고 신문대금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기업노조에게는 간담회 참석도 정상적인 근무로 인정해 주는가 하면 이런 노조들에게는, 금속노조들에게는 사무실도 다 반납하라고 하고, 아주 차별적으로 지금 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노조 깨기에 대해서 사용주는 용역 폭력진압을 하고, 경찰은 진압 방관을 하고 있고, 노동부는 자신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박자가 돼서 지금 노조 깨기가 너무나 심각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노동부에서 인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조 깨기가 자행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동법의 기본권인 교섭권과 단결권이 폭력으로 저지되면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가 제대로 노동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시각과 관철이,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그러한 관점이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부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제대로 감독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좀 올렸으면 싶습니다.

저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최대한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주신 만도의 쟁의행위 관련된 자의 징계 부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저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몇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받아 가면서까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조 운영은 노동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시간 면제하고 경비 원조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예전부터 이루어져왔고요. 결코 저희가 노조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필요한 감독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고요.

저는 친기업 반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에서는 노동 나름대로 깐깐하다라고 하지만 또 경영 쪽에서도 굉장히 저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노동 측면도 있고 반기업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중립적으로 노동권은 정당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하시면서 보니까 선진 노사문화 정착, 상생의 일터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기반을 잡았다고 하시고, 그래도 밑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저는 지금 경제민주화팀에서 여야가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순환출자 중지니

뭐니 하지만서도 경제민주화는 우리 노동 현장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이 경제민주화를 노동현장에 있으면서 노동자를 이용해서 중간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당연히 중간 착취라든지 중간 불로소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살아 있는 직업안정법의 임금 중간 착취는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2500개, 한 3000개 정도의 용역회사가 하고 있는 것, 재벌이 가지고 있는 몰아주기식 하청회사, 이게 전부 불로소득입니다. 그것 중간 착취로 다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면 직업안정법에 있는 직업공급하고 있는 영업용 허가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민법 원리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직업안정법상으로는 소개 행위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이고요.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직업 소개 행위를 하는 인력관리 업체 이런 사람들이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요금보다 더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이 세무서에 신고만 해 가지고 허가만 내놓고 인력을 모집해 가지고, 컨택터스도 마찬가지 그런 회사입니다. 그 사람은 경비를 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 다른 데 있는 용역, 이 경제민주화의 대상이 될 노동을 착취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중간착취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법을 보완하더라도 그 문제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저하고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저희들 직업소개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불법파견을 할 경우에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봉홍 위원 항의해야…… 불법파견 있잖아요, 지금.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기업을 경영해서 지금 타임오프니 근로시간이니 전부 이 법률에 맞춰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이 되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올려서 그 이익금을 해당되는 조합원이나 노조간부들에게…… 단체협약을 해 놓으면 해마다 그것을 물고 나오니까, 내년에 이익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인센티브식으로 돈을 줬습니다. 이런 것도 근로자 지원에, 노동조합에 만약에 줬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걸립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조의 운영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현재 법에 되어 있고.

○최봉홍 위원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다만 최소한의 노조사무실이라든지 조합원의 경제적 불행, 재해,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부조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노조하고 배분하는 것이, 말하자면 근로자 신분에서 기여한 것에 대한 상여금 성격인지 아니면……

○최봉홍 위원 그 대신에 기업이 어려우니까, 자기도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들 조합비 내고 운영하는 것 보니까 딱하거든요. 그거 내가 좀 도와줬다 그것도 부당행위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봉홍 위원 괜찮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특정 노조 조합원만을 위한, 특정 노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은 그것은 맞지 않지요.

○최봉홍 위원 다시 확인을 해 주세요. 전체 근로자를 위하는 것은 가능하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컨대 전체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들은 문제가 없지요.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임금체불 피해자가 28만입니다. 체불액이 1조 900억입니다. 3년간 매년 1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사건 중에 사법권을 가진 감독관이 처리한 건수는 5만 2049건입니다. 그런데 5만 건을 넘고 있는데 사법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수사해서 해결했는데 2010년도에 구속사건은 11건, 2011년 13건 이렇게 하고 그 해

결 건수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불업주는 벌금 조금 물면 끝입니다. 여기 노동위원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노동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들어가서 지노위, 중노위, 행정심판, 대법원까지 갔다 오면 한 1년 잡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근로자들 굶어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세력의 힘을, 손을 벌리게 되고 정치세력에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노노가 갈라지고 노사가 갈라지고 사사가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임금체불이 나왔을 때에 사법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 딱 오면 지금 신고를 받습니다. 받고 이것을 다시 법률구조를 하려면 감독관이 전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 근로자가 법률구조로 또 찾아가야 됩니다, 카드를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고, 감독관이 또 오면 '일 밀렸습니다' 하고 '다음에 오시오' 두 번, 세 번 미룹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근로자는 불만이 쌓이고 가스가 차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결국은 노동부를 불신하고 임금체불에도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로서 좀 확고하게 급속도로 처리해 주셔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처음에 신고하면 불러 가지고 바로 해당 체불주 불러서 빠른 시간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현재 금년도 내용을 보면 금년 평균 처리일수가 47.6일입니다, 1건 처리 하는데. 47.6일 하면 아마 그 노동자는 한 서너 달은 놀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처리해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는 해 가지고 지금 화물연대니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간에 불로소득 버는 것 좀 제거하는 데 정책을 좀 맞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안 주시고요?

○최봉홍 위원 예,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 보호대책 노동부가 조사해 가지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특히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취학기 위주로 중점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 8월 현재로 저희들이 한 1750여 개소를 점검해서 그중에 위반업체가 1500여 건 정도로 나왔고요, 위반 건수가 6900건 정도로 상당히 위배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에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으로 이 친구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SNS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그중에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성폭력까지 당해 가면서 그래도 지켜나가는 그런 애들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불안요인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물론 학교나 그런 곳에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나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체불이 됐을 때는 즉각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취지 잘 알겠고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충분히 체감되는 효과는 약한 것 같습니다. 해서 안심하고 알바할 수 있게끔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청소년리더들이 같은 또래끼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점들도 많이 보여지도록 하겠고요.

특히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정부가 사법조치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전에 현장시정지도를 통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독 우리나라 사업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임금체불 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든 제도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년 8월 1일부터는 명단 공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고요. 또 임금체불 한 경우에 그 사업주의 금융상 제재, 신용 제재까지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봉홍 위원 노동부에서 사법제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해 버리면 확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래서 저희들 예

전에 한 3년 전에는 1년에 임금체불로 구속된 건수가 2, 3건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1년에 10건 넘는 정도로, 금년 상반기에 벌써 12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해당 사업주가 임금체불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끔 전문가들을 우리 부에 많이 보강하려고 합니다. 노동변호사라든가 공인노무사를 특별채용해서 해당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에게 경종도 울리고 빨리 해결되게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과의 역할 협업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봉홍 위원 아르바이트 보호책은 학교를 통해서 가지고 홍보를 하면 제일 빠를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 하셨나요?

○최봉홍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답변도 다 하셨나요?

○최봉홍 위원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한정애입니다.

오늘도 청주 LG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어서 1명이 사망하고 지금 13명으로 부상이 나왔는데 얼마나 더 피해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있었던 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장 재해보고를 장관께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당일부터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화재감식반이랑 과학수사대 또 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국과수까지 해서 합동으로 어쨌든 재해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조사 결과가 경찰청 이름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장관께서 파악하시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산업재해 원인이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전문기관, 저희 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께 조사를 하고 또 감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천장에 설치된 가설 전등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한정애 위원 가설 전등에 의한 스파크라고, 어쨌든 전기 누선에 의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확한 것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조금 더 봐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가설 전등 스파크에 의한 화재라고 또 산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설 기자재와 가설 전등을 관리해야 되는 원 책임은 GS건설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GS건설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원청에도 있고 하청에도 다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원청에 속해 있습니다. 원청에 속해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사실 공사기간 단축에 큰 이유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해외와는 다르게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공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홀하게 되는 바람에 많은 사고가 있고 상당히 많은 산재사망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작된 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프로젝트 심의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께서 4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주 설계자인 민현준 홍익대 건축과 교수 역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공기다' 지적을 하고 연장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역시 무시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언론보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발주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임기 말인 2013년 2월 5월 준공을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 공공프로젝트는 또는 이 주 설계자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20개월에 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월 공사기간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주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임의적으로 공기를 단축해서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기가 특정하게 보장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마는 그 공사기간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해서 이 공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정한 공사기간이 중간에 단축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정애 위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처음부터 이 기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한정애 위원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한정애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계획된 기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한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공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특히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기의 단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실질적인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검토내용이 좀 추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공사가 어쨌든 2011년 11월 12일에 착공이 되고 고용노동부가 이 현장에 딱 한 번 안전점검을 나갔습니다. 딱 한 번이요. 그것도 올해 우기 대비 현장점검에서 지적한 것은 방수턱 할석작업자에 대해서 방진마스크 쓰고 보호안경 착용해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내용 일부 미시정된 것 교육 안 했네, 이 정도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특별점검한다, 일제점검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건설현장에 사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발 어떤 일이 났을 때 특별점검, 일제점검하지 마시고 상시적인 점검이, 그것도 예고되지 않은 점검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씩 가지 마시고 이런 일제점검이 아니라 상시점검을 해 주시고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한정애 위원 아니요, 대답을 현장에 대한 상시점검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약서에다가 공사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넣자는 제안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해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한정애 위원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름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좀 의견을 나눠보겠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한정애 위원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 4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40명이 산재로 돌아가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하고 있는데 그만두라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예, 그때 결국은 처벌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벌금 2000만 원 물고 말았습니다. 40명이 돌아가셨는데 2000만 원으로 다 면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이번에 GS건설, 현대미술관도 가서 파악을 해 봤는데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의 3분의 2 정도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기간제로 있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안전관리, 퍼트롤(patrol)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일정부분 규제를 해야 되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주요한. 파악을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녀왔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올해 어쨌든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불법파견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불법파견이라고 확정이 나오고 난 뒤에,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뒤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해소하라고 하는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왜냐하면 금속노조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 관련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더만요. 아마 이게 관련해서 곧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금속노조가 파견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이 있어야지만 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특히나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난 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당연히 법원 판결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한정애 위원 잠깐만요,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우선됩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우선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다툼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3심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한정애 위원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는 비록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전에 노동위원회 판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다툼이 계속 권리라는 이유로 잘 듣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을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저는 파견법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하게끔 하고, 직접 고용을 시키도록 지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정말 슬펐던 것은, 2004년, 2005년에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점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때도 물론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그 당시 노동부는 '노무관리상 독립성 결여다' 해 가지고 사내하도급 업체 122개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판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정에 불응했지요,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적법 도급으로 판단해 버리는 바람에 불기소처분이 돼 버렸지요. 여기서 제가 정말……

그것을 또 보고하고 계시나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검찰의 적법 도급 판단으로 불기소 처리된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노동부가 검찰의 입장에 준하도록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변경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3심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진행될 때 대체적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나도 노동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침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리함과 동시에 바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입장에 준하도록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2010년에 실제로 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자동차공장의 파견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노조에서 '노동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러면 이제는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의 검찰의 판단을 만족시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기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그 취지를 반영하는 지침으로 불법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판단기준의 지침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결이 있으면 바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가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와 생각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정애 위원 다르지 않은데요, 저는 지금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보낸 공문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에 '귀사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내 하도급을 적법하고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사내 하도급을 적법하고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위상에 맞도록 사회적 책임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법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다고 지금 노동부가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하라고 시정 지시를 해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도……

○한정애 위원 왜 검찰이나 현대자동차 앞에서만 이렇게 약해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회적 책임도 포함해서 잘 하라는 취지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가 끊겼는데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서 2010년부터 '근로자 파견 판단에 관한 지침' 이런 점검표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실태점검표에만 집어넣으셨습니다.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지침을.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지침에 들어 있는 표지요.

○한정애 위원 이 지침은 2007년에 있었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2010년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대법원 판결 취지 중에서 실태점검표에만 조금 추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 관련된 지침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이제 그만 하시지요. 또 다음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용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서용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작년에 1354억 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률이 92.4%에 이르던데요, 이 중에 인건비 지원액 총액이 907억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기수익은 거의 없고 매년 정부 지원만큼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사회적기업이 워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윤 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물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기업적 요소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273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었는데 계속 고용이 유지된 경우는 898명, 32.8%에 불과합니다. 경영 실적이 좋지 못하니까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고용을 더 이상 유지를 못 하게 되고,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인건비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인건비 지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비중을 연차별로 줄여 나가면서 간접지원, 여러 가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경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치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초기이고 정착 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경영 컨설팅 비용 같은 게 전체 예산 중에 고작 18억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 예산 중에 196억이 집행됐던데 집행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지원금 자체가 대폭 감소됐는데, 주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게 이제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조건을 굉장히 어렵게 설정하다 보니까 그 조건을 지켜서 지원받는 사람들 발생이 늦게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같이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경우에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은 타 취업을 희망하는, 예를 들면 청년인턴제 대상들과 같이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보호해 줘야 될 정도인데, 아까 지급 간격을 어렵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다 그러셨는데 이걸 꼭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무래도 경기, 고용 상황도 감안하고, 또 작년에 처음 만든 제도다 보니까 시행착오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지급 단위기간이 6개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게 지금 기업체 쪽의 사업주들한테 물어보면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한 군데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이게 청년인턴제를 활용하는 취업 희망자하고 경쟁이 되게 되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만든 것들이 지금 그나마 지급하는 그 금액마저, 그 지원마저도 제대로 실효성을 갖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은 대책대로 그 특성에 맞는 방안을 같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다음에 제가 결산을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속기록들을, 회의록을 죽 봤는데 늘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기금 운용 문제입니다. 고용보험기금하고 산재보험기금 운용이 거의 매년 꼴찌에 해당되는, 미흡이라고 그럽니까? 평가를 그렇게 받았던데, 이게 지금 올 2011년도 기금운용평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앞부분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이거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의 특성이 그런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게 이겁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 자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하면서도 인프라 차원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부서 인력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나름대로 체계적인 방안들을 작동한 것인데 그 부분이 불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수년간 계속해서 냈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 시스템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된 것인데, 아무래도 다른 기금 운용과 달리 어떤 부서가, 그리고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고 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필요한 인력 증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에 비해서 나은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익률을 보면 고용보험 수익률이 6.69%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6.12%고요, 사학연금은 6.00%고, 공무원연금은 5.01%로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마는 유독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러면 그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 아닙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 아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 30명 가까이 운용 인력이 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을 지금 20명이 커버하면 30명이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하면 그것은 문제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운용을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위원회라든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가동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경우에는 매년 하위 30%에 대해서는 탈락시키고, 또 진입하지 않은 기관 가운데 우수한 기관들을 신규로 진입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런 노하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률이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평가 시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아까 SJM 직장폐쇄 관련해서 답변했던, 권혁

태 국장님이십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홍영표 위원 잠깐 나와 보십시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홍영표 위원 국장님이시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홍영표 위원 아까 제가 사회를 보고 있어서 말을 못 했는데요, 아까 은수미 위원께 답변하실 때 '직장폐쇄를 사용자가 할 때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조법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홍영표 위원 속기록에 있으니까,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적어 놨어요. 그 말을……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SJM의 직장폐쇄와 농성 중인 근로자들을 폭력으로 해서 해산한 것은 별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직장폐쇄를 하는데 폭력적 방식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직장폐쇄를 하면 노조법상 그것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 대답만 하세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뭐가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말을 잘못했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이 사항에 대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직장폐쇄를 7월 26일 날 신고를 했습니다, SJM이.

○홍영표 위원 제가 그것은 다음 단계로, 구체적 사실확인 관계에서 물어볼 테니까 제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아까 분명히 '폭력을 수반한 직장폐쇄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의견이 여전히 맞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직장폐쇄는 노조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지요

○홍영표 위원 그래서 폭력을 수반할 경우에, 직장폐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주가 폭력을 동원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불법입니다.

○홍영표 위원 불법이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왜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장폐쇄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느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직장폐쇄를 하는데, 지금 직장폐쇄도 우리가 공격적인 직장폐쇄다, 방어적인 직장폐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직장폐쇄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형사적으로는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홍영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내가 물어보겠다고요. SJM의 구체적 상황을 놓고 이야기는 다음 단계에서 할 텐데, 고용노동부의 직장폐쇄에 대한 정확한 법해석의 원칙과 기준,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폭력을 수반한, 방어적인 직장폐쇄든 공격적인 직장폐쇄든 폭력을 동원해서 직장폐쇄를 했다, 이것 노조법상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직장폐쇄는 적용받습니다.

○홍영표 위원 SJM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직장폐쇄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받습니다.

○홍영표 위원 폭력을 수반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직장폐쇄를 했다면 그것은 사용자 측의 불법이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맞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까 답변 잘못한 거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홍영표 위원 어떻게 달라요? 설명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직장폐쇄를, 폭력을 SJM이……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7월 26일 날 직장폐쇄를 신고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자, 이것 정리하고 갑시다. 말을

지금 장관님부터 빙빙 돌리면서 이러니까 내가 정확히 확인하려고 그래요.

직장폐쇄를 하는데 폭력을 수반해서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했다, 그러면 노조법의 적용을 받고 그것은 불법이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셨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다음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7월 26일 날 SJM에서 직장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오후에. 그리고 직장폐쇄는 27일부터, 즉 00시부터 직장폐쇄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직장폐쇄가 되었고, 다만 직장폐쇄가 개시된 이후에 농성 중인 근로자들이 약 80여 명이 있었습니다. 직장폐쇄는 이미 개시가 되었고요, 00시부터. 용역이 4시 반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즉, 농성 중인 근로자들을 해산시키고자 한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용역법에 따라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수반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직장폐쇄는 00시부터 이미 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당연히 직장폐쇄에 불응해 가지고 농성 중인 근로자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당연한 불법이지만 직장폐쇄를 이미 그전에 신고해 가지고 0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직장폐쇄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연결이 좀 어렵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거고요. 같은 논리로 파업 중에도 파업의 목적이……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타임라인을 내가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직장폐쇄를 했어요. 직장폐쇄를 했는데, 새벽 4시에 농성 노조원들 80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몰아냈잖아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홍영표 위원 그것은 노조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것은 경비업법하고 폭력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께서 원래 질의 자체가 직장폐쇄가 불법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직장폐쇄는 그 자체 선언으로 이미 진행된 거고 그 직장폐쇄에 불응해서 농성 중인 근로자들을 끌어낸 것은 형법이라든가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이라든가……

○홍영표 위원 직장폐쇄라는 것은 경비업법에 안 나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형법에도 안 나오지요? 형법이나 이런 데 안 나오지요. 폭력행위처벌법 이런 데 직장폐쇄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없어요. 이것은 노조법에만 있는 용어에요, 직장폐쇄가.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맞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폐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것도 왜 노동법의, 노조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직장폐쇄는……

○홍영표 위원 정말 해괴한 논리입니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폐쇄는 노조법의 적용……

○홍영표 위원 해괴한 논리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결론을 얘기할게요.

지금 폭력을 수반한 이런 직장폐쇄는 불법이다, 또 직장폐쇄 동안에 발생한 것도 불법입니다. 노조법상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 폭력을 행사한 고용주의 불법 파업을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잔꾀를 쓰다 보니까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위원님, 근로자들의 파업 과정에서도 파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노조원들이나 막 충돌해 가지고 폭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홍영표 위원 됐어요, 권 국장님 들어가시고.

장관님, 제가 아까 장관님 말씀 죽 들었는데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친기업 반노동이 아니다 이러는데 참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들의 공격적인 직장폐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편파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친기업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채필 장관님을 불러요. 장관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지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SJM도 어찌됐든 이 직장폐쇄를 지금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폭력사태를 일으키고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서 완전히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계속해서 '이것은 노조법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업법 또는 형

법에 해당하는 그런 사태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SJM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다. 노조 그것을 가지고 두드려 잡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폭력 행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 지적하실 때 '폭력을 행사한 SJM의 직장폐쇄가 불법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폭력은 안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폭력에 따른 책임은 져야 되지만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직장폐쇄까지 당연히 불법이 되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일관된 해석에 의하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위원님께서는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해괴한 논리를 편다고 하시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코 사용자 편파적이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저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노조가 파괴되기를 바랍니까? 노조가 제대로 교섭력을 가지고 행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영표 위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고용노동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명백히, 대통령의 철학이 기업프렌들리인가 뭔가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사태가 난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KEC, 유성기업, 3M……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한다, 공정하게 한다,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결코 친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조가 파괴됐습니다. 그게 많은 노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들, 또 산하기관장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각급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받고 나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2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이 징수결정액 대비 이행강제금의 수납률은 2008년 56.7%에서 작년 같은 경우 2011년도는 41%로 크게 감소가 됐거든요.

이 구제명령에 불복해 가지고 중노위의 재심 신청으로 가거나 또는 행정소송,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승소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반환한다는 안내를 직접 합니다, 지금 현재.

하더라도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불이행하고 또 아예 이행강제금 이 자체도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당히 이 법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그런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부당해고라든지 또 휴직이나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해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접 강제라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세입 감소, 부족 차원을 넘어서 법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주에 대한 제재수단이 결론은 미흡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고용부노동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나름대로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이행지시를 잘 따르게끔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뒤에 또 다툼을 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것을 이유로 제대로 안 내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서 체납자 재산을 조회한 뒤에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산관리공사하고 공매 대행 협정을 체결해서 실효성 있게 필요한 수납·징수가 되게끔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한계에 부딪쳐서……

○김성태 위원 제가 이번 질의 준비하면서 파악

해 보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요. 좀 이런 부분은, 물론 이행강제금 미수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우리 고용노동부의 이런 사업주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 주는 그런 측면에서, 간접 강제거든요. 간접 강제 이 자체가 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인식을 갖게끔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8월 2일 날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제도가 새로 도입됐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서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체불 경우에 악의적·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명단공표제도를 아주 어렵게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호되는 공익가치하고 침해되는 사익의 형량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 9월 9일 비정규 종합대책을 당정 간에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예, 제가 비정규대책 위원장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작년에 휴가도 가지 못한 채 이 비정규 종합대책을 만들어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정규 차별 개선이라든지 처우 개선에 많은 단초를 확보했는데, 특히 당시 노무현 정부나 또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많이 시도했지만 결국은 그걸 해결해내지 못했거든요. 이 9·9 비정규 종합대책을 통해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잘 확보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펴고 또 지난번 퀵서비스, 택배, 이런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운영이 상당히 지금 절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아마 지금 최종적으로 긴밀하게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특단의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그야말로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영세사업장 수습 근로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겠고요, 퀵서비스, 택배 산재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된 기능들도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 11월 달에 공공부분 비정규 종합대책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해 나가는데, 특히 그때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령 교과부 같은 경우에 영어 학습강사 같은 경우는 이 대상에서 아예 빼 버렸어요. 빠져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구제하겠다, 이 대책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계속 챙기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법령상으로는 제외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처에서 좀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은 취지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고직이라는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이 약 250만 명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산재 발생률이 34배나 더 높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250만 특고 노동자들 중에서 화물운수 근로자하고 간병인만 빼고 건설 중장비 기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이 사람들은 지금 산재보험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화물운수 근로자와 간병인이 지금 현재 산재보험 혜택을,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런 직종 가운데도 간병인 같은 경우는 약 한 6만 2000명가량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준이에요. 평균 한 92만 정도인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중환자의 경우에도 병원 감염체에 의해서 재해 문제가 심각한데도 지금 현재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고, 더군

다나 상당히 고용 형태도 개별적이고 참 어려운데, 이런 간병인들 산재 혜택 부여 계획을 앞당길 수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간병인을 비롯해서 고용 형태가 기존의 고유한 근로자 개념하고 거리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든 보호 방안은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간병인 종사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알선기관이 알선을 통해서 개인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말하자면 특정 업체에 소속된 간병인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사업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알선기관을 사업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해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데 또 보험료 부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시작할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예결위가 똑같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위원님들이 네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충질의를 받고 여기서 끝내도록 할 텐데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배고프고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니까 행정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바닥에 그냥 앉아서 작업을 하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사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노동부에서 오실 때 그리 많이 오실 필요가 없는 분들은 안 오셔서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보충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장하나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간다고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더 면밀한 심사를 하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미리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러면 지금 제일 바쁘신 한정애 위원님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장관께서 예결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읽으실 때 보면 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와 함께 불법파견 시 즉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등을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의 이 의지가 현대자동차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벌의 오만함도 문제지만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대법원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있고, 노동부조차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이 6개월 이상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침의 변경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때문에 바뀐 행정지침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바뀌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또 하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해서 어디 현장을 방문하시면 시정 지시를 낼 때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위반사항의 시정지시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시라고 문서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에 대해서 해소하라고 하는 공문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라고 문서로 시정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 기회 주십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 이건 ‘예, 아니요’로 하시면 되니까…… 답을 길게 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지시 결과를 다른 시정지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한정애 위원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해외취업사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하고자 연습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좀 돼서 일부 답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을 할 때는 일반회계든 또는 기금이든 국가재정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해외취업과 관련된 사업은 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위탁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당연히 국가재정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역시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였던 글로벌 취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과욕을 부리셨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초과해서 사업이 집행돼서 2012년 현재 부족한 사업비가 168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국정과제에 부도 사태가 발생을 한 셈이지요. 그러면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서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인력공단이 7월 26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45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노동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회계의 전용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공단 내부적으로 4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그중에 퇴직급여충당적립금에서 한 27억 정도를 전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은 민간기관인 인력공단 직원들의 퇴직급여입니다. 충당기금입니다. 이것을 국가사업을 하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재정법 위반이라고 그 당시에 입법조사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내부적으로 퇴직급여충당적립금 전용 외에 팀장급 이상의 성과급 반납, 이것도 인건비지요. 이러저러 하다고 보면 해외취업 사업비 167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타 사업에서 전용되는 45억 500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지금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제가 인력수급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한정애 위원 사실은 정상적으로 재정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금 167억 부족분 중에서 타 사업에서 전용했던……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사회적 민간보조금에서 45억 5000만 원 정도를 빼서 넣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실 건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지금 현재 부족예산이 한 8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정애 위원 81억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을 전용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입법조사관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되는 것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이 81억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위원님,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입법조사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 노무법인, 이런 쪽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정애 위원 예, 그거 봤는데요. 법무법인 동인, 삼덕회계법인, 동화노무법인…… 아주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다, 노조와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둥…… 퇴직충당금을 쓰는 데도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저희들은 그런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따라 가지고……

○한정애 위원 이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합니까, 국가재정법을 해석하는 국회 입법조사관의 해석이 우선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저희들은 그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한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167억 중에서 45억 정도만 지금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부족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직적립금충당금을 쓴 것은 그 나름대로 이사회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정애 위원 이사회를 거치면 민간기금을 국가 재정사업에 그냥 막 갖다가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가역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다시 퇴직충당금으로 갖다 줄 수도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퇴직충당금은 예를 들어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지급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노동부가 2010년 해외취업사업비에서 13억을 빼 가지고 청년인턴DB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장관께서는 원칙을 얼마나 중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과제라고 되어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본부하고 산하기관에서 편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 부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록 산하기관의 일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심의한 것과 달리 인원을 초과한다든지 단가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할 테고요.

제가 선제적인 감사까지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다른 감사하고 포함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모자라는 부족액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퇴직충당급여에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사태가 있을지라도……

○한정애 위원 성과급 반환도 안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결국에는 그것이 국가가 책임져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충정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오늘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결산이라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산재기금 문제가 아까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고용보험은 금년도 이율이 0.61%이고 산재보험은 2.15%로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하는 자체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 산재·고용 기금하고 비슷한데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34명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금 이것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5명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바빠 가지고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좀, 금년에는 인원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이율이 낮게 안 나오고 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지난번 수익률이 좀 내려간 부분은, 인프라의 걱정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순 요인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부딪힌 일시적인 문제였다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잡월드 건립에 2000억, 전국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에 5500억, 그 외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사업비에 고용보험에서 돈 빼내서 썼다 아닙니까? 고용보험 그런 데 써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계정도 있고 또 고용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한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월드나 고용센터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청소년들 직업관을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서, 이직도 줄이고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금 목적에 저희는 부합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봉홍 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예산을 일반회계로 짬으로 인해서 고용보험이 금년에 0.61밖에 안 됐거든요. 이 돈이 들어갔으니 그것밖에 될 수가 더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계정 자체가 적립금 배율이, 실업급여 분야 적립금 배율이 낮은 것이고 고용안전 분야 적립금 배율은 노사정이 합의한 기준보다 더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고용안정계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봉홍 위원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런 부분……

○최봉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직업능력개발특별계좌제가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성공률이 옛날에 물량배정으로 할 때 45.4% 정도 취업이 됐는데 지금 33.6%로 도로 하향했습니다, 금액은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계좌의 개인에게 줘 버리니까 이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교육을 이것 받다가 저것 받다가 바꿔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자금만 날아가는 그런 형식인데, 오히려 종전에 하던 물량배정방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특별계좌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그 부분이 예전에 훈련기관 위주로 공급자 중심으로 하던 시절에는 선택권이 훈련 수요자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 계좌제 형태가 되는데요, 계좌제로 하고 났더니 참여한 훈련기관이라든지 과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봉홍 위원 과정은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훈련 받은 인원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좌제 한 지가 수년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훈련기관이 종전에 비해서는 거품이 빠져서 줄어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물량배정 때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변수가 훈련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중도 탈락률이 계좌제 시절에 와서 옛날의 물량배정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지금 탈락률은 계좌제가 더 안 많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닙니다. 탈락률이 예전에 물량배정 시절에 20.7%에서 계좌제하고 나서는 탈락률이 14%로 됐고요. 그다음에 훈련생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물량배정 시에 4.1에서 계좌제 하고 나서는 4.4로……

○최봉홍 위원 만족도야 물론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높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높은데, 취업률이 낮아진다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민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7월 27일 날 발생한 SJM 사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8월 23일 현재까지 고용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권혁태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직장폐쇄가 쟁의행위 맞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쟁의행위 맞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2조6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맞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맞습니다.

○은수미 위원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행위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현재 SJM의 쟁의행위는 7월 27일, 권혁태 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7월 27일 00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폭력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위원님, 그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수미 위원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은수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노조와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테니까.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보겠습니다.

집무규정 31조(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이런 것은 충분히 아시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은수미 위원 그 2항2호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위법하거나 그 밖의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4의 조치기준에 따라 신속히 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별표4의 조치기준이라 함은 '폭

력·파괴·생산시설의 점거 등 쟁의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기준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며, 그 신속한 조치라 함은 즉시 범죄인지라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셨습니까?

즉시 범죄인지라는 조치를, 그러니까 인지, 범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인지조치라는 것을 근로감독관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경비업에 폭력이 발생한 것은 쟁의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수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미에, 제가 노조하고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비교를 좀 해야 되겠네요. 노조가 평화적으로 파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공장점거 행위를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제31조(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에 따르면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그런 시설 점거나 폭력·파괴행위가 있으면 즉시 범죄인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사용자가 용역과 계약을 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쟁의행위 과정 중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즉시인지 조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안 했습니다.

○은수미 위원 왜 안 하셨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성격이 다르다…… 즉 노조의 쟁의행위에서의 폭력은 노조법에 저촉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용자의 쟁의행위 중, 즉 7월 27일 00시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중 폭력이 발생한 것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위원님, 통설에 따르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은수미 위원 해당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직장폐쇄는 법률행위입니다.

○은수미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법률행위가 아니라 쟁의행위입니다.

제가 여쭤 봤습니다. 쟁의행위에 파업·태업, 쟁의행위라고 2조6항에 나와 있는 것을 처음에 여쭤 봤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전운배 실장님도 한때 노사관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아마 잔뼈가 굵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채필 장관만이 폭력을 혹시 조장하거나 방조하셨나 했는데 고용부 간부들께서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혁태 국장은 직장폐쇄는 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2조6항에 따라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운배 당연히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입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아까 권혁태 과장이 법률행위이다라고 답변한 것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법률행위라고 대답한 것은 쟁의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운배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똑같은 것을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29조에 따르면 노동동향 파악이라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사단체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해서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할 뿐만 아니라 근로행정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29조2항과 3항에 따라, 특히 폭력·파괴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근로감독행정시스템으로 즉각적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이 조항이, 근로감독관 행정시스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위원장대리 김성태 지금 보충질의 중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마무리할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사용주의 쟁의행위에서 이런 문제는 근로감독행정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보고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합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운배 예컨대 사용자가 직장폐쇄 중에……

○은수미 위원 그냥 답만 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운배 여러 정황,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 아니, 쟁의행위…… 저는 일반적으로 여쭤 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운배 사용자의 쟁의행위 중에 그러한 폭력……

○은수미 위원 폭력·파괴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쟁의행위에 대해서 노사 모두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운배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요.

○은수미 위원 예.

가십시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운배 사용자가 직장폐쇄 중에 쟁의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은수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국회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은수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장하나 위원 짧게……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입니다.

아까 SJM의 경우에 일단은 직장폐쇄에 대한 의견 차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 현재 해당 지청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지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행이 잘 된다고 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파견된 근로자들은 나가서 다시 일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기존에 파견근로자들이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법처리는 다 조치를 하신 것입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파견법 위반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장하나 위원 조치를 하셨다고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파견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업자에게, SJM에게 조목조목 각 항목에 위반되는 것을 이미 통보를 하고 통보에 따라 가지고 파견근로자를 다 돌려보냈지요. 돌려보냈고, 그리고 그 법 위반으로 기소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 안 되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SJM 남아공 현지법인 근로자 11명이 와 있던 부분 아실 텐데요. 이분들 역시도 대체근로금지 위반으로 시정 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 중인데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 건은 저희가 관계당국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쪽에서 이미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오늘까지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바라고요. 이런데도 아직 사법처리는 안 하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사법처리를 검찰과 협의해 가지고 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밟고……

○장하나 위원 아직 기소까지는 안 간 것이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도 해제 촉구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노조원들이 하루에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제한을 받고 용역들이 확인을 해서 인원제한을 하고 출입하고 있고요.

또 이 경우도 되게 굴욕적인 일인데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을 허물고, 담장을 허물고 없던 철계단을 만들어서 노조사무실을 마치 사람이,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정말 개구멍으로 드나드는 듯한 이런 노조원들에 대한 굴욕적인 처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노조사무실 출입 문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쟁의기간 중에라도, 직장폐쇄 기간에라도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당연히 그렇게 지도를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 쟁점이 되고 다툼이 됐던 분야가 사측에서 노조를 형사고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은 뭐냐 하면 파업 과정 중에 일부 생산의 주요 부품들, 노트북 등등을 빼돌려 가지고 노조사무실에 은닉을 하고 있다……

○장하나 위원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그게 조사가 될 때까지 일종의 장물이기 때문에 출입을 허용……

○장하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측도 직장폐쇄 과정에서 용역깡패 동원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폭력 범죄가 일어났는지는 아실 텐데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 입장은 노사가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금 법정에 가 있으니까 판결 날 때까지 그렇게 일방적인 처사는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주장을, 수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은 당연히 출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노위 위원님도 오셨지만 위원님이 중재를 서시고 해 가지고 저희 지청하고 사측하고 같이 20명, 그러니까 직장폐쇄 기간 중에……

○장하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모든 파업 노조원들이 다 출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20명에 대해서 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고……

○장하나 위원 그 인원제한의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직장폐쇄 기간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락날락거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하나 위원 왜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릴 수 없지요? 법 절차를 중시하시는데 법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한 근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산 공장 말고 시화에도 SJM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화 공장의 물량이 완전히 외주화돼 가지고 도급을 주고 있는데 이런 사실 파악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도급 문제는 파업 이전에도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직장폐쇄 중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공장의 물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직장폐쇄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대체근로…… 대체근로가 아니지요, 도급·하도급을 써 가지고 생산을 해 버리면 노동쟁의행위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그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요.

이게 열흘 전에 조치사항이라고 받아 놨는데요. 시정 조치하신 것은 다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법처리가 왜 늦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빨리 조치하시고 그 내용을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친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채필 장관님께서는 반노동 반기업 이런 얘기 들으신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해당 노조

에서 그런 애기들을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문제의 소지를 제공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알겠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내일 당장이라도 제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실시한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홍영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태 위원, 김상민 위원, 서용교 위원, 이종훈 위원, 김경협 위원, 은수미 위원, 장하나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경협 위원 그리고 김상민 위원, 한정애 위원, 김성태 위원, 심상정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소관별 법률안 등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경협	김상민	김성태	서용교
신계륜	심상정	은수미	이완영
이종훈	장하나	주영순	최봉홍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전문위원	이동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유영숙
기획조정실장	정연만
자연보전국장	백규석
자원순환국장	최홍진
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장	이창석
녹색환경정책관	이찬희
환경보건정책관	정회석
기후대기정책관	박천규
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감사관직무대리	윤명현
국제협력관	유연철
대변인직무대리	박광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강형신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국립생물자원관장	안연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박응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유승직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상배
금강유역환경청장	오종극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재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이희철
원주지방환경청장	이규만
대구지방환경청장	심무경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박미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윤승준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기획조정실장	전운배
고용정책실장	한창훈
노동정책실장	조재정

노동시장정책관	이 재 홍
인력수급정책관	이 태 희
직업능력정책관	박 성 희
고용평등정책관	신 기 창
고용서비스정책관	정 지 원
근로개선정책관	박 종 길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 기 섭
노사협력정책관	권 혁 태
공공노사정책관	시 민 석
국제협력관	안 경 덕
대변인	김 경 선
감사관	황 보 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 종 태
중앙노동위원장	정 종 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 영 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 영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 헌 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 성 규
한국고용정보원장	정 철 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 재 구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 종 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 기 권
기상청	
청장	조 석 준
기상선진화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기획조정관	박 정 규
예보국장	이 우 진
관측기반국장	박 관 영
기후과학국장	엄 원 근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 재 철
수치모델관리관	육 명 렬
지진관리관	김 영 신
국립기상연구소장	권 원 태
국가기상위성센터장	이 희 상
기상레이더센터장	양 진 관
항공기상청장	최 치 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2. 7. 23 이완영·나성린·손인춘·은수미·이만우·홍지만·강기윤·송영근·최봉홍·주영순 의원 발의)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7. 23 정부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2. 7. 23 백재현·이찬열·이용섭·김현미·박남춘·박수현·장병완·변재일·신장용·강기정·최재성·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24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2. 7. 26 최봉홍·주영순·이완영·이현재·한기호·김성찬·윤명희·정성호·이만우·김을동·김세연·정희수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2. 7. 26 이목희·최규성·김현미·이미경·이석현·정성호·인재근·유은혜·송호창·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7일 회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2. 8. 1 홍영표·이윤석·이목희·이용섭·이인영·안규백·한명숙·김경협·은수미·윤관석·윤후덕·장하나·한정애 의원 발의)

8월 2일 회부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2. 8. 2 장하나·김동철·김재윤·김춘진·김현미·문병호·박민수·박원석·박인숙·박홍근·배기운·백재현·우원식·원혜영·유대운·윤관석·은수미·인재근·전정희·정성호·정진후·최동익·최민희·홍종학·홍영표 의원 발의)

8월 3일 회부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2012. 8. 6 은수미·장하나·신경민·김용익·홍영표·박원석·최동익·최민희·김경협·한정애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2012. 8. 6 은수미·장하나·신경민·김용익·홍영표·박원석·최동익·최민희·김경협·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7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2. 8. 7 안홍준·이한성·김성찬·김정록·남경필·최동익·문정림·신경림·이재영·홍일표·박창식·유재중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

(2012. 8. 7 李宰榮·이재영·문대성·이만우·함진규·이명수·김을동·정의화·김한표·강은희 의원 발의)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2. 8. 7 김재윤·우윤근·배기운·최민희·남인순·박민수·최원식·배재정·이상민·이명수·김경협·김윤덕·유성엽·박홍근·유대운·민홍철·안민석·문병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8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2. 8. 9 김성태·이한성·최봉홍·이종훈·김정록·안홍준·이만우·전하진·이현재·주영순·남경필·이에리사·권은희·김장실·이완영 의원 발의)

8월 10일 회부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2. 8. 10 한정애·김경협·김기준·김재윤·박남춘·배재정·송호창·심상정·은수미·인재근·장하나·최동익·최민희·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8월 13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2. 8. 13 김광진·도종환·문병호·박남춘·배기운·백재현·서영교·신경민·우윤근·유대운·유승민·유승희·유은혜·이학영·전병헌·전정희·주승용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2. 8. 13 최봉홍·정희수·이만우·박창식·송영근·김을동·강은희·김세연·정갑윤·신성범·여상규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2. 8. 13 최봉홍·정희수·이만우·박창식·송영근·김을동·강은희·김세연·정갑윤·신성범·여상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14일 회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2. 8. 14 김성태·안홍준·남경필·김정록·최봉홍·전하진·박민식·노철래·김우남·이완영 의원 발의)

8월 16일 회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2. 8. 16 정우택·박인숙·金永柱·김장실·황영철·원유철·전하진·송광호·남경필·김현숙·김성찬·이장우·이한성·조현룡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2. 8. 16 박남춘·이춘석·유대운·최동익·김용익·한정애·이낙연·전정희·배기운·김재윤·서영교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2. 8. 16 박남춘·이춘석·유대운·최동익·김용익·한정애·이낙연·전정희·배기운·김재윤·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17일 회부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2. 8. 17 홍영표·이목희·이찬열·은수미·이미경·한정애·장하나·진성준·강동원·정청래·이윤석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2. 8. 17 강동원·김상희·박원석·박홍근·서기호·신경민·심상정·우원식·윤관석·전병헌·정진후·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0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8. 20 김춘진·홍영표·강동원·유대운·문병호·김상희·박민수·김윤덕·김성곤·정희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0 조정식·최동익·강창일·이진복·박수현·김영주·김관영·문희상·양승조·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3 심재철·황진하·박인숙·신경림·이재균·정성호·이한성·이재영·강은희·김을동 의원 발의)

8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2012. 8. 14 김춘진·최재성·김재윤·김태원·박원석·은수미·도종환·한정애·최원식·민홍철·이인영·유은혜·배기운·정성호·이에리사 의원 발의)

8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2012. 8. 20 한정애·김기준·김경협·김관영·김재윤·노명민·박기춘·박남춘·배재정·송호창·유은혜·은수미·이인영·인재근·장하나·최동익·최민희·한명숙·홍영표·홍종학 의원 발의)

8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